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창출효과

조달호 유인혜

Employment Effects of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창출효과**

연구책임

조달호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유인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일자리 효과 양호 사회참여 기회 주고 일거리도 많이 제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주관적 가치에만 의존... 객관적 평가 필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마을 활동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는 주로 마을활동가의 사례발표에서 언급되는 주관적 가치(주민 역량 강화, 긍정적인 관계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체의 일자리·일거리 발생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는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주민제안사업’(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사업)과 ‘기반조성사업’(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운영)의 2가지 사업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일자리·일거리 성과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자리·일거리의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즉 ‘일자리 = 취업’ 또는 ‘일자리 =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를 그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자리행정통계 제시기준에 맞으면 일자리, 안 맞으면 일거리로 분류

이 연구는 일자리·일거리 구분에 있어 ‘통계청(2012년 이후 각 연도), 일자리행정통계’를 활용하였다.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일자리’는 사회보험료·소득세·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근로자(임금 또는 비임금 근로 활동을 하는 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즉,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할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두 개로 계산된다. 이 연구는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위치를 ‘일자리’로 구분하고 그 외 해당 사항이 없는 나머지를 ‘일거리’로 분류하였다.

주민제안사업은 1인 한 달 총합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자리’로 구분하였다. 그 외 2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서류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일거리’로 분류된다.

기반조성사업의 근로자는 회사 이외의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이 중 1개 이상 신고하는 경우는 ‘일자리’로 구분하고 2개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일거리’로 분류된다.

[표 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구분

구분		주민제안사업	기반조성사업
파악 가능한 행정자료		소득세	사회보험, 소득세
분류	일자리	소득세 납부자(소득 월 25만 원 초과)	사회보험 有 또는(or) 소득세 납부자
	일거리	소득세 미납부자(소득 월 25만 원 이하)	사회보험 無 및(and) 소득세 미납부자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 조사… 예산의 약 40%가 인건비성 경비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조사는 2015년 서울시 본청 실 · 국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6개 단위사업(보조사업 23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 방법은 각 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주민제안사업의 분석 대상: 6개 단위사업 및 보조사업 개수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상 등록 현황(개)	분석 유효사업(개)	분석 유효사업(%)
① 공동육아	43	42	17.6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9	18	7.6
③ 마을기업	9	8	3.4
④ 마을예술창작소	33	28	11.8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9	101	42.4
⑥ 마을연계망	44	41	17.2
합 계	257	238	100.0

분석 결과 6개 단위사업의 예산 총액은 3,912백만 원이고 이 중 38.7%에 해당하는 1,516백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총액 기준 우리마을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금액(659백만 원)을 사용하였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적게(75백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단위사업별 인건비 총액/보조사업 개수)는 6.4백만 원이었는데 단위사업별로 비교하면 마을기업이 14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마을연계망이 3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인건비 총액은 우리마을지원사업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적은 반면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는 마을기업이 가장 높았고 마을연계망이 가장 낮았다.

단위사업별로 사업 예산 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마을예술창작소가 예산의 절반 이상(52.4%)을 인건비로 지출한 반면 마을기업은 1/4(28.7%) 정도만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각 단위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민제안사업의 사업 예산 및 인건비 현황

(단위: 개, 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개수	사업 총 예산	인건비성 경비 총액 (예산 대비 비중)	보조사업 1개당 인건비
① 공동육아	42	710,178,331	229,111,747(32.3%)	5,455,042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225,140,480	74,505,727(33.1%)	4,139,207
③ 마을기업	8	403,440,000	115,815,507(28.7%)	14,476,938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623,086,380	326,764,052(52.4%)	11,670,145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1,646,599,100	659,365,915(40.0%)	6,528,375
⑥ 마을연계망	41	303,991,000	110,173,946(36.2%)	2,687,169
합 계	238	3,912,435,291	1,515,736,894(38.7%)	(전체 평균) 6,368,642

인건비는 서울시 보조금과 사업자의 자부담금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인건비 전체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살펴보면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높았고(98.3%), 마을기업이 가장 낮게(69.7%) 조사되었다. 마을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보조금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공동체 스스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여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일거리가 총 2,732개 발생해 ‘효과 매우 탁월’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생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근로(참여) 인력을 조사한 결과 총 2,732명(중복 인력 제외)이 본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는 우리마을지원사업(1,305건)에서 가장 많았고, 마을기업(105건)이 가장 적었는데 두 사업 간에 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보조사업 개수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업 1개당 평균 근로(참여) 인력은 11.3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우리마을지원사업 등에서 평균보다 더 많은 근로 인력이 사업에 참여한 반면 마을연계망과 다문화마을공동체는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다.

[표 4] 주민제안사업의 참여 인력 및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

(단위: 개, 명)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개수	참여 인력(명)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명)
① 공동육아	42	420	10.0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142	7.9
③ 마을기업	8	105	13.1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426	15.2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1,305	12.9
⑥ 마을연계망	41	334	8.1
합 계	238	2,732	11.3

전체 근로 인력 2,732명에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한 결과 일자리는 627개(23.0%), 일거리는 2,105개(77.0%)로 나타났다. 총 39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627개의 일자리를 발생 시킴에 따라 이를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와 비교¹⁾해보면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는 160.3(명/10억 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41.0명/10억 원)보다도 약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 개수 및 평균 인건비

구 분	일자리			일거리		
	인원(명)	총액(원)	1개당 평균 인건비(원)	인원(명)	총액(원)	1개당 평균 인건비(원)
합 계	627	1,014,266,491	1,617,650	2,105	501,470,403	238,228
① 공동육아	78	131,155,653	1,681,483	342	97,956,094	286,421
② 다문화 마을공동체	50	53,908,930	1,078,179	92	20,596,797	223,878
③ 마을기업	47	104,182,507	2,216,649	58	11,633,000	200,569
④ 마을예술 창작소	128	244,159,168	1,907,494	298	82,604,884	277,198
⑤ 우리마을 지원사업	274	422,118,273	1,540,578	1,031	237,247,642	230,114
⑥ 마을연계망	50	58,741,960	1,174,839	284	51,431,986	181,099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일거리 일급 많지만 월급 적고 참여일수 짧아

주민제안사업의 근로 인력 1명당 참여 기간 전체에 걸친 임금 총액은 일자리가 평균 161.8만 원이고 일거리는 평균 2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임금 총액을 일급과 월급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일급의 경우 일자리는 평균 14.5만 원이고 일거리는 평균 10.9만 원으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둘 다 통계청의 최저임금 일급(2015년 최저임금 일급 44,64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 = 최종 수요'라는 가정을 하고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와 비교함

반면 월급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평균 62.6만 원이고 일거리는 평균 13.2만 원으로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일급의 경우 일자리와 일거리 간 격차는 약 1.3배에 그친 반면, 월급의 경우 일자리가 일거리보다 약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월급으로 일거리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의 경우도 월 급여가 월 최저임금인 1,166,22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자리 · 일거리의 임금 수준(평균 일급, 월급) 비교

구 분	평균 일급(원)			평균 월급(원)		
	일자리	일거리	비교	일자리	일거리	비교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 전체	145,152	109,099	1.3배	626,351	132,290	4.7배

주민제안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일수가 일자리 · 일거리 모두에서 짧게 나타났다. 일거리의 경우 1인당 평균 참여 일수는 4일에 불과하였고, 일자리의 참여 일수 또한 29일로 나타나 1개월도 채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급이 높은 반면 월급은 낮고, 일급에서 월급으로 갈수록 일자리와 일거리의 급여 차이가 커지는 등의 특징은 주민제안사업의 사업기간이 짧고, 참여 활동유형도 강사, 원고작성, 회의참석 등으로 비상근이면서 몇 번의 참여가 전부인 간헐적 참여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민제안사업: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고용효과 1위... 단위사업별로 특성 달라

일자리와 일거리를 합하여 투입예산 대비 참여(근로) 인원이 가장 많은 단위사업은 마을연계망으로 10억 원당 1,099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로 국한시켜 놓고 볼 경우의 고용 효과는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크게(222명/10억 원) 나타났다. 한편 사업 예산 전체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위사업은 마을예술창작소로 인건비 비중이 52%를 넘어섰고, 사업 1건당 평균 참여 인력도 15.2명으로 최다로 나타났다.

우리마을지원사업은 보조사업 건수가 가장 많아 사업 예산과 인건비 모두 총액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거리를 포함한 참여 인력도 1,305명으로 최다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을기업은 자부담금에서 지출된 인건비 비중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가장 높고, 참여

인력당 임금이 최고 수준(평균 110만 원), 참여 인력 중 일자리의 비중이 최고 수준(44.8%) 등으로 참여 인력에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성을 보였다. 마을기업이 타 사업과 비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마을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일정 부분 연관되어 해석 가능할 것이다. 공동육아 사업은 참여 인력의 활동 유형(보육 교사) 중에서 근무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렇듯 단위사업들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한 특징들을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11개 단위사업으로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성장단계별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이 대표적... 99%가 일자리

기반조성사업의 대표 사업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자치구 생태계 지원’ 사업이다. 기반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도모 수단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일거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역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고용 정보를 설문 조사하였다. 2017년 3월 기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1개소에 53명이 근무하고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은 19개소에 6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설문조사는 광역지원조직 21명, 중간지원조직 6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98.8%가 일자리에 해당되었고, 그 중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16년 상반기 기준 2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 받는 일자리가 전체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 또한 38.8%로 나타났다.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일거리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98.8%가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고용 형태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가 95.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원조직은 기간제근로자가 100.0%였지만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73.3%)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20.0%)인 고용 형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지원조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근로계약 기간은 광역지원조직 종사자의 19.0%가 3년 이상 계약이었고,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90%는 1년 이하로 나타나 광역지원조직이 중간지원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광역지원조직의 월 평균 임금은 254.3만 원인 반면 중간지원조직은 186.4만 원 수준으로 광역지원조직이 중간지원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반조성사업: 주민제안사업보다 일자리 발생 효과 안 크지만 질은 좋아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일거리 발생 효과를 주민제안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11.1(명/10억 원)이 도출된다²⁾. 이는 전 산업 평균 정도의 일자리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주민제안사업의 160.3(명/10억 원)과 비교하면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가 훨씬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일거리 대비 일자리의 비중, 월급여 수준, 근로기간 등의 조건에서는 기반조성사업이 주민제안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됨을 알 수 있다.

[표 기]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

구분	사업 예산		일자리 생성 건수(건)	일자리 발생 효과(명/10억 원)
	금액(천 원)	비고		
주민 제안사업	3,912,435	- 2015년 예산액 기준 - 연구 대상 6개 단위사업 기준	627	160.3
기반 조성사업	10,282,916	- 2017년 예산액 기준 - 광역지원조직: 5,218,436천 원 - 중간지원조직: 5,064,480천 원	114	11.1
합 계	14,195,351		741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한정) = 최종 수요'라는 가정을 하고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와 비교함

3) 해당 결과는 설문조사 참여자뿐만 아니라 광역지원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출함

[표 8] 기반조성사업과 주민제안사업 간 일자리 · 일거리 관련 특성 비교

구분	기반조성사업		주민제안사업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 일거리 개수	80개 (설문조사 미참여자 포함 시 114명)	1개	627개	2,105개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	51.3%	-	1.4%	-
평균 월 급여	207만 원	무급(겸직)	62.6만 원	13.2만 원
평균 일 급여	-	-	14.5만 원	10.9만 원
근로(활동) 기간	1개월 이상 ~ 1년 이하 80%		평균 29일	평균 4일
기 타	- 기반조성사업의 98.8%는 일자리에 해당 - 일거리 1개 타 직장에 다니면서 무보수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		- 주민제안사업의 23.0%만이 일자리에 해당	

일거리는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일자리로 발전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

상기 내용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거리’ 생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일거리’에 해당하는 참여 인력들은 돈벌이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일거리’는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일거리’는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반조성사업에 종사하는 한 여성 관계자는 ‘일거리’를 통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주민제안사업의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키워 현재의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제안사업은 ‘일자리’ 효과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일거리’도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일거리 관련 DB 구축법·시스템 개선하고 지출결의서 작성교육 필요

이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인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를 일자리·일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일거리 측면에서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사업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주민제안사업의 단위사업 간에도 사업 목표와 담당 부서, 세부 추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일자리·일거리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방법의 개선,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지출결의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측면에서는 정량적인 방법 이외에도 정성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분석단위도 주제별, 성장 단계별로 통합하여 접근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연구 개요	2
1_배경 및 목적	2
2_범위 및 방법	3
3_일자리 · 일거리의 개념 정의	6
0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관	12
1_정책 추진 개요와 연혁	12
2_주민제안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14
3_기반조성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29
03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	36
1_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개요	36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41
3_소결	57
04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	62
1_설문조사 및 분석 개요	62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64
3_소결	83

05 종합 및 논의	90
1_사업유형 간 일자리 · 일거리 주요결과	90
2_논의 사항	94
참고문헌	97
부록	98
Abstract	100



표

[표 1-1] 주민제안사업의 연구 대상 사업명	4
[표 1-2] 기반조성사업의 연구 대상 사업명	4
[표 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의 일자리 · 일거리 구분	9
[표 2-1] 2015년 주민제안사업의 연도별 보조사업 선정 건수 (서울시 본청 실 · 국 사업 대상)	16
[표 2-2] 주민지원사업 지원절차 흐름도	18
[표 2-3] 2015년 주민지원사업의 단위사업별 추진 부서 및 지원 규모	19
[표 2-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도별 단위사업 개수 및 예산집행 현황	19
[표 2-5] 부모 커뮤니티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0
[표 2-6] 공동육아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1
[표 2-7] 다문화 마을공동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2
[표 2-8]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3
[표 2-9] 에너지자립마을의 사업 세부내용	23
[표 2-10] 에너지자립마을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4
[표 2-11] 마을기업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4
[표 2-12] 마을예술창작소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5
[표 2-13] 마을미디어의 사업 세부내용	26
[표 2-14] 마을미디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6
[표 2-15]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사업 세부내용	27
[표 2-16] 우리마을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7
[표 2-17]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사업 세부내용	28

[표 2-18]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28
[표 2-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예산	31
[표 2-20]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사업 내용	32
[표 2-21]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현황	33
[표 3-1]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일거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항목 및 세부 내용	37
[표 3-2] 2015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39
[표 3-3] 연구 대상 단위사업의 보조사업 개수	40
[표 3-4]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예산 비교	42
[표 3-5]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비교	44
[표 3-6]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 출처 비중 비교	46
[표 3-7]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임금근로자) 비교	47
[표 3-8]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임금근로자) 비교	48
[표 3-9]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임금근로자)당 평균 임금 비교	49
[표 3-10]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발생 개수 비교	50
[표 3-11]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인건비 총액 비교	51
[표 3-12]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1개당 평균 인건비 (사업기간 전체) 비교	52
[표 3-13]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1개당 평균 일급 및 월급 비교	53
[표 3-14]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 전체 일자리·일거리의 임금 수준 (평균 일급, 월급) 비교	53
[표 3-15]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1개당 참여(근로) 일수 비교	54
[표 3-16]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일거리 활동 유형	55
[표 3-17]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일거리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일급, 월급) 해당 여부 비교	59

[표 4-1] 기반조성사업 설문조사 대상	63
[표 4-2] 기반조성사업 대상 설문조사 항목	64
[표 4-3] 일자리 · 일거리 분류기준별 종사자 분포	69
[표 4-4] 기반조성사업의 기관별 일자리 · 일거리 분포	70
[표 4-5] 소속기관 유형별 임금 유급 · 무급 여부	72
[표 4-6] 소속기관 유형별 근무 형태	79
[표 4-7]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중 기관별 임금 수준 분포	84
[표 5-1]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	91
[표 5-2]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 취업유발계수(통합중분류)	91
[표 5-3] 기반조성사업과 주민제안사업 간 일자리 · 일거리 관련 세부특성	92



그림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그림 1-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 구분	3
[그림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31
[그림 3-1]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 비중 비교	45
[그림 3-2]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 효과 비교	57
[그림 3-3]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 비교	57
[그림 4-1]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65
[그림 4-2] 응답자 성별 분포	65
[그림 4-3] 응답자 현재 신분 분포	65
[그림 4-4] 응답자 신분별 현 근무지 경력 평균	65
[그림 4-5] 응답자 현재 소속 신분별 평균 총 경력 연수	66
[그림 4-6] 응답자 소속기관별 신분 분포	66
[그림 4-7]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67
[그림 4-8] 소속기관별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68
[그림 4-9] 중간지원조직 소속기관별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68
[그림 4-10] 주요 경력별 평균 경력 연수	69
[그림 4-11] 기반조성사업의 종사자 고용 형태	71
[그림 4-12] 기반조성사업의 종사자 계약기간 분포	71
[그림 4-13]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72
[그림 4-14]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72
[그림 4-15] 임금 산정기준 분포	73

[그림 4-16]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여부	73
[그림 4-17]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고용형태	74
[그림 4-18]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계약기간	74
[그림 4-19] 광역지원조직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75
[그림 4-20] 광역지원조직의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75
[그림 4-21] 중간지원조직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75
[그림 4-22] 중간지원조직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75
[그림 4-23]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월평균 임금	76
[그림 4-24]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임금 산정기준	76
[그림 4-25]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77
[그림 4-2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종사자의 근로형태 분포	77
[그림 4-27]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78
[그림 4-28]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78
[그림 4-29]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79
[그림 4-30] 민간위탁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80
[그림 4-31] 민간위탁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80
[그림 4-32] 자치구 직영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80
[그림 4-33] 자치구 직영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80
[그림 4-34] 민간네트워크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81
[그림 4-35] 민간네트워크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81
[그림 4-3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월평균 임금	82
[그림 4-37]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임금 산정기준	82
[그림 4-38]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83

01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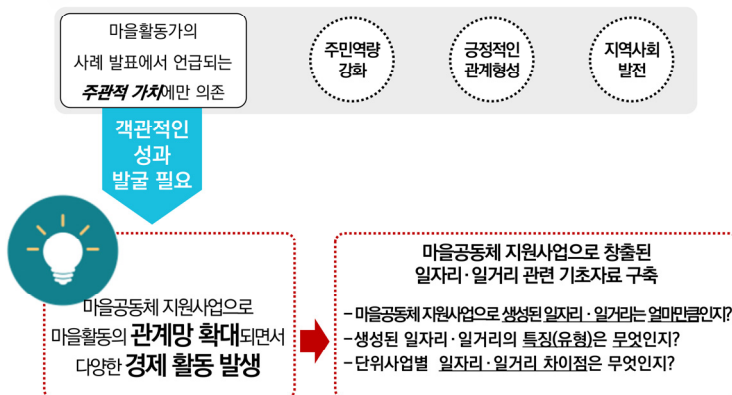
- 1_배경 및 목적
- 2_범위 및 방법
- 3_일자리 · 일거리의 개념 정의

01 | 연구 개요

1_배경 및 목적

- 민선 6기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필요한 컨설팅 및 비용을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마을 활동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일거리 발생과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는 주로 마을활동가의 사례발표에서 언급되는 주관적 가치(주민 역량 강화, 긍정적인 관계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체의 일자리·일거리 발생과 같은 객관적 성과 파악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상태임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인 일자리·일거리 발생 현황에 관한 정량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고용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는...?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_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의사결정과정임
 - 과거 정책 의사결정과정은 지시전달 위주의 의사소통 방식인 Top-Down에 크게 의존
 - ‘Bottom-Up’은 ‘Top-Down’과 달리 현장의 의견에서 정책이 출발하는 구조
-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크게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 연구는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 일거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주민제안사업’은 현장(시민)에서 요구하는 의제를 정책(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제안함. 주민 3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공모방식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함
 - ‘기반조성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시민)과 정책(행정) 간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민 · 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체계를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임



[그림 1-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 구분

- 주민제안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서울시 본청 실·국이 담당하는 11개 단위사업 중 6개만을 대상으로 함. 연구 대상 사업의 선정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음
 - 2016년에 시행된 주민제안사업 중 일부는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어 사업비 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 사업비 정산 없이는 인건비성 경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이 불가함
 - 이에 따라 현재(2017년 3월) 기준 가장 최신의 원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2015년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표 1-1] 주민제안사업의 연구 대상 사업명

연번	주민제안사업(단위사업명)	추진 부서(담당 실·국)
1	공동육아	보육담당관
2	다문화 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4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5	우리마을지원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6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이하 '마을연계망')	지역공동체담당관

- 기반조성사업은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체계를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일자리·일거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기반조성 사업의 대표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이 있음

[표 1-2] 기반조성사업의 연구 대상 사업명

연번	기반조성사업(사업명)	추진 부서
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2) 연구 주요 내용

-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 일거리 등이 발생되고, 그 특징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생성된 일자리 · 일거리는 얼마만큼인지?
 - 생성된 일자리 · 일거리의 특징(유형)은 무엇인지?
 - 단위사업별로 일자리 · 일거리 차이점은 무엇인지?
- 이를 위해 먼저 일자리 · 일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기준 마련에 있어서는 아래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므로 기존 방식인 ‘취업자 = 일자리’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위와 같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본 현황을 검토하여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각 사업별 일자리 · 일거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성과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기초자료 등이 없는 상태
 -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은 원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시간적 범위를 상이하게 설정하여 접근함
 - 주민제안사업은 2015년 추진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반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을 대상으로 함⁴⁾
- 셋째, 자료 조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특성을 파악함

4) 주민제안사업은 2017년 3월 기준 가장 최신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2015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2016년 사업은 일부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사업비가 미정산된 것이 있음. 이로 인하여 원자료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 자료 구득이 불가함

-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나아갈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자 함

3) 방법

(1) 문헌 고찰 및 자료 검색

- 일자리 · 일거리 개념 구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 조사 등

(2)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조사 및 정리

- 주민제안사업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원자료로 활용하여 일자리 · 일거리 발생 성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

(3) 설문조사

- 기반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기관 및 조직을 대상으로 고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 일거리 현황을 조사

(4)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진행 사항 및 전반에 대한 이해 도모

3_일자리 · 일거리의 개념 정의

1) 선행자료 검토

-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부족함
 - 사전적 의미에서 일자리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하는 반면, 일거리는 일을 하여 돈을 벌 거리로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업무, 일감, 일 등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일거리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감 또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의미 해석 및 어감 차이는 주관적인 기준일 뿐 ‘일’이라는 개념을 가운데 두고 동일선상에 있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
- ‘통계청(2012년 이후 각 연도),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일자리 개념 및 접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통계청은 2012년부터 고용 · 노동 ·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 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일자리란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 또는 비임금 근로 활동⁵⁾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임금근로일지리는 일용근로일자리까지 포함함
 - 임금근로일자리와 비임금근로일자에 대한 해당 여부와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가 기준이 됨
 - 기업체(사업체)의 범위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회사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이외의 법인(회사 이외의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단체),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1인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개인 기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까지 포함함
- 상기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일자리행정통계의 ‘일자리’는 사회보험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근로자(임금 또는 비임금 근로 활동을 하는 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즉,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할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두 개로 계산됨
 - 일자리와 일거리 구분에 있어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한 접근 방법은 사전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짐

5)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이 해당된다(네이버 지식백과, 통계표준용어, 접속일자: 2017. 5. 29).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구분

- 본 연구의 일자리와 일거리 구분은 행정자료(사회보험, 과세자료 등)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한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를 차용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일자리’로 함
 - ‘일거리’는 사회보험료 · 소득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근로 활동 중 비임금 근로 활동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의 일자리 · 일거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위와 같은 일자리 · 일거리 판단 기준은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은 각각 사업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 소득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준은 상이함
- 먼저, 주민제안사업은 1인 한 달 총합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고용 위치는 ‘일자리’로 분류함. 2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2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고용 위치는 ‘일거리’로 취급함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을 합한 것을 지칭하는 것임
- 기반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 일거리 조사 대상자는 회사 이외의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와 같이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을 원천징수하므로 이 중 1개 이상 신고하는 경우를 ‘일자리’로 구분하고 2개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일거리’로 분류함

[표 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의 일자리 · 일거리 구분

구분		주민제안사업	기반조성사업
파악 가능한 행정자료		소득세	사회보험, 소득세
분류	일자리	소득세 납부자(소득 월 25만 원 초과)	사회보험 有 또는(or) 소득세 납부자
	일거리	소득세 미납부자(소득 월 25만 원 이하)	사회보험 無 및(and) 소득세 미납부자



0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관

- 1_정책 추진 개요와 연혁
- 2_주민제안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 3_기반조성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0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관

1_정책 추진 개요와 연혁

1) 정책 배경 및 목적

-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 차원 또는 이웃 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OECD 국가행복지수 34개국 중 한국 32위(2017년 기준)⁶⁾
 - 통계청의 가구주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증가율이 2012년 106만 명에서 2035년 30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
 - 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로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 OECD 평균 2.3배,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⁸⁾
- 공동체의 해체로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실종되었고 공공의 정책적 지원은 마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민관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고, 서울시(행정)는 주민이 마련한 자원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지향

6) OECD 홈페이지, 국가 행복지수(<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접속 일자: 2017.5.25)

7) 통계청 홈페이지,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wcd=MT_ZTITLE&parentId=A#SubCont, 접속 일자: 2017.5.25)

8) OECD 홈페이지, 자살률(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WSaOPCCL571#page120, 접속 일자: 2017.5.25)

2) 추진 연혁

- 2012년 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방향과 원칙, 주요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주민,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설치
- 2012년 3월, 광역전담부서로서 혁신기획관 아래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공모로 채용
 - 정책 담당부서이자 다른 실·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정, 연계하는 역할
 - 2016년부터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4개 팀의 21명이 마을공동체와 지역협치 업무를 수행 중
- 2012년 3월, 자치구 집행기관으로서 자치구 마을과(팀) 생성
- 2012년 8월, 서울시는 민·관의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 차원의 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
- 2013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치구 마을 중간지원조직(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2기로서 민관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최소단위인 행정구역을 동(洞)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동 단위 마을계획을 현재까지 추진 중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유형 분류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유형은 직접 지원인 ‘주민제안사업’과 간접 지원인 ‘기반조성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적 지원은 주민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사업이 이에 해당
 - 간접적 지원은 공동체 활동에 유용한 정보, 콘텐츠, 전문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생태계 등에서 담당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에 따라 지역공동체담당관을 포함한 서울시 ‘본청 담당 사업(실·국별 단위사업)’과 ‘자치구별 자유 공모사업(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나뉨
 - 본 연구는 ‘본청 담당 사업(실·국별 단위사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함
- 기반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이 해당됨.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및 성과 관련 연구,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총 1개소이고 현재(2017년 3월 기준) 53명이 근무하고 있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운영 기간은 3년임
 -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은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을 지원하는 것임. 현재(2017년 3월 기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1개소당 평균 2 ~ 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운영 방식은 ▲ 민간위탁형, ▲ 자치구 직영형, ▲ 민간네트워크형 등 총 3종류로 구분됨. 운영 기간은 1년임

2_주민제안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⁹⁾

1) 사업 개요 및 연혁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서 2012년 21개 사업으로 다양한 추진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함
 - 2012년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사업 중 마을과 연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 추진사업(21개):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공동체, 저소득노인지원 마을공동체,

⁹⁾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주민제안사업 중 시행 주체가 서울시 본청의 실·국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보조금관리시스템상 지출결의서 확보가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인 2015년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함

장애인마을공동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육아, 청소년휴카페,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공동주택 활성화, 마을기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교류, 에너지 자립마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조성(운영)지원,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사업, 한옥마을공동체희망사업, 우리마을프로젝트,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작은도서관, 주민참여동네숲 조성사업, 마을나눔(녹색)장터 운영, 마을도시농업 지원 등

- 2013년에는 21개 사업 중 1년 동안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15개 사업으로 재조정함
 - 제외사업(9개):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공동체, 저소득노인지원 마을공동체, 장애인마을공동체, 농어촌체험휴양, 마을교류,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작은도서관, 주민참여동네숲 조성, 마을나눔장터 운영, 마을도시농업 지원사업 등
 - 추가사업(3개): 상가마을 활성화, 다문화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 2014년 ~ 2015년에는 11개 사업으로 통합되거나 변경됨. 일부 사업은 서울시 본청의 특정 부서나 자치구의 자체사업으로 이전되기도 함
 - 북카페 조성: 2014년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통합
 - 청소년휴카페, 한옥마을: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상가마을공동체: 2015년 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으로 통 · 폐합
 - 우리마을프로젝트: 2015년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전환
 - 안전마을: 2015년 안전디자인사업으로 변경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2015년 신규 개설
- 2015년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은 총 11개이며, 그에 따른 연도별 보조사업 선정 건수는 2012년 388건에서 2015년 711개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477개로 감소함

[표 2-1] 2015년 주민제안사업의 연도별 보조사업 선정 건수(서울시 본청 실·국 사업 대상)

구분	단위사업명	추진부서 (담당 실·국)	연도별 보조사업 선정 건수(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	부모커뮤니티	여성정책담당관	140	212	147	152	157
2	공동육아	보육담당관	15	26	38	43	25
3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0	5	12	12
4	아파트마을(공동주택)공동체	공동주택과	119	173	176	179	-
5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7	11	15	29	-
6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8	50	17	9	-
7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23	25	23	27	23
8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46	51	41	48	64
9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북카페, 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만 포함)	지역공동체담당관	30	97	141	105	118
10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	-	67	28
11	마을연계망	지역공동체담당관	-	-	-	40	50
합계			388	655	603	711	477

출처 1(1번 ~ 10번 사업): 안현찬(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 자료), 서울연구원

출처 2(11번 사업): 서울시(2016), 내부자료(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현황), p.17

2) 사업 절차

- 보조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7단계의 사업 절차를 거침
- 1단계: 사업계획 수립 공고
 -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경험이 있는 주민, 자치구의 의견을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마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진행
 - 사업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2단계: 사전컨설팅
 -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안내하고 사전교육을 위해 시 사업부서, 시 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별 전문 지원단이 협력하여 사전컨설팅의 내용과 방법 기획
- 3단계: 사전제안서 접수
 -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¹⁰⁾인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모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진행
- 4단계: 심사 및 선정
 - 실·국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10명 이내로 선정심의회를 구성
 - 선정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심사에 제안자 참여
- 5단계: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진행 안내를 위해 자치구 사업부서, 선정자(마을사업지기) 워크숍 진행
 - 마을사업지기는 심사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실행계획서 업로드 후 자치구(사업부서)와 심사로 선정된 마을사업지기 간의 협약 체결
 -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회원 가입 후, 사업정보 및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현황을 확인한 후 바르게 집행되고 있을 경우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을 통해 보조금 교부가 가능(사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로 보조금 교부)
- 6단계: 지원사업 실행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일정 및 사업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사후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 필수

¹⁰⁾ 직장이나 실질적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로 성별, 연령의 제한은 없음. 단, 직계가족인 경우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함

- 서울시 마을과(시 마을지원센터)에서는 마을 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시 사업부서, 사업별 전문 지원단과 마을컨설팅 및 네트워크는 시 사업부서·사업별 전문지원단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에서 각각 진행
- 7단계: 결과 보고 및 평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을 진행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작성
 - 마을사업지기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시 사업부서가 구성한 외부전문가), 행정 만족도 평가(마을사업지기가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표 2-2] 주민지원사업 지원절차 흐름도

지원절차	내용	추진주체	
		서울시사업	자치구사업
사업계획 수립 공고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 계획수립 · 공고	시 사업부서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사전컨설팅	·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시 마을지원센터 사업별 지원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제안서 접수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괄 접수 · 시/자치구 담당 부서 담당자 접수 처리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심사선정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 선정심사 ·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시 사업부서 운영위원회	자치구 마을팀 운영위원회
협약 보조금 교부	· 선정자 워크숍 · 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 · 협약 ·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마을사업지기
사업실행/ 모니터링/ 실행컨설팅	· 지원사업 추진 · 현장 모니터링 및 실행 컨설팅 · 중간 평가 및 보조금 2차 교부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시 사업부서 사업별지원단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결과 보고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 · 행정과 주민 상호평가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출처: 서울시(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p.15

3)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총 11개로 사업마다 담당 실·국과 지원 규모가 모두 상이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정책 담당부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연계망 사업을 담당

[표 2-3] 2015년 주민지원사업의 단위사업별 추진 부서 및 지원 규모

연번	단위사업명	추진 부서(담당 실·국)	지원 규모
1	부모 커뮤니티	여성정책담당관	200만 원 내외
2	공동육아	보육담당관	300만 원 ~ 4,000만 원
3	다문화 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00만 원 내외
4	아파트 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1,000만 원 내
5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500만 원 ~ 5,000만 원
6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3,000만 원 ~ 5,000만 원
7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2,000만 원 내
8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500만 원 ~ 2,500만 원
9	우리마을지원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1,500만 원 ~ 5,000만 원
10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400만 원 내외
11	마을연계망	지역공동체담당관	- 연계 및 확장 지원: 700만 원 내 - 주민모임 컨설팅 지원단 5,000만 원 내

- 2015년 기준, 11개 단위사업의 예산 총액은 11,537백만 원으로 '12년과 비교하면 보조사업 수는 줄어든 반면 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예산 총액(보조사업 개수): '12년 59,684백만 원(21개) > '13년 17,390백만 원(15개) > '14년 13,307백만 원(12개) > '15년 11,537백만 원(11개)

[표 2-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도별 단위사업 개수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사업 개수	예산액	단위사업 개수	예산액	단위사업 개수	예산액	단위사업 개수	예산액
주민제안사업 실·국 사업	21	59,684	15	17,390	12	13,307	11	11,537

출처: 서울시(2016), 내부자료(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현황), pp.5~17

(1) 부모 커뮤니티

- 사업 목적: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사업 내용: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내 부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 기간(정산 및 평가): 2015. 4 ~ 2015. 10(11월 ~ 12월 중)
 - 지원 규모: 모임별 200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부모 커뮤니티, 직장부모 커뮤니티, 어린이집 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
 - 지원 분야: 부모 교육, 자녀 교육, 건강 증진 및 문화 프로그램, 지역 봉사 등
- 예산액: 2015년 기준 371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부모 커뮤니티사업의 예산은 2012년 1,000백만 원, 2013년 1,000백만 원, 2014년 546백만 원, 2015년 371백만 원으로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표 2-5] 부모 커뮤니티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부모 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40	1,000	212	1,000	147	546	152	371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2) 공동육아

- 사업 목적: 주민 자율적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육아 모임을 지원, 지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부모들이 자녀 품앗이 양육, 함께 돌봄 활동을 하는 사업 지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원 규모: 3백만 원 ~ 4천만 원(평균 1천만 원)

- 재지원 23개소(2차 지원 14, 3차 지원 9): 지원 금액(재지원 시마다 20%씩 삭감), 심사 방법(서류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신규지원 10개소 ~ 15개소(예산 범위 내): 지원금액(개소당 40백만 원 이내), 심사방법(신청자·마을활동가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컨설팅기관 별도 선정(50백만 원 이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육아 공동체 및 지원 종료된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네트워킹
- 예산액: 2015년 기준 482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공동육아사업의 예산은 2012년 500백만 원, 2013년 610백만 원, 2014년 542백만 원, 2015년 482백만 원으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

[표 2-6] 공동육아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공동육아 (출산육아담당관)	15	500	26	610	38	542	43	482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3) 다문화 마을공동체

- 사업 목적: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환경 개선 등 스스로 주도하여 공동의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 사업 내용: 외국인밀집지역의 문제 해결 및 화합 · 공존을 위한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원 사업: 내 · 외국인 간 문제 해결 및 화합 · 공존을 위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활동
 - 지원 규모: 1천 ~ 2천만 원(다문화마을사업: 5백만 원 내외, 컨설팅사업: 5백만 원 내외)

- 예산액: 2015년 기준 6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은 2015년 60백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함

[표 2-7] 다문화 마을공동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다문화 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10	100	5	60	12	60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4) 아파트 마을공동체

- 사업 목적: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관리비,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 각종 아파트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이 있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모 대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갈등 해소 사업: 아파트 관리비 절감, 층간 소음, 층간 흡연 등, ▲ 생활공유(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및 차량 공유(카셰어링) 사업, ▲ 그 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텃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 강좌, 주민 화합 등)
 - 지원사업비: 10백만 원 이내(시 · 구매청), 자부담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의 30% 이상
- 예산액: 2015년 기준 759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아파트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은 2012년 1,157백만 원, 2013년 1,301백만 원, 2014년 1,355백만 원, 2015년 759백만 원으로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은 큰 폭으로 감소

[표 2-8]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아파트 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119	1,157	173	1,301	176	1,355	179	759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5) 에너지자립마을

- 사업 목적: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서울시의 선제적 행정 지원을 통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표준 모델을 조성하여 타 마을 모범사례 확산 전파
- 사업 내용: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자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활동을 하는 사업지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 [표 2-9]와 같음
 - 지원 규모: 기존 1천만 원 ~ 5천만 원, 신규 5백만 원 ~ 1천만 원

[표 2-9] 에너지자립마을의 사업 세부내용

분야	지원 및 사업 간 협업
절약	• 컨설팅: 마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방안 제시 • 모니터링: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증감 실적 관리 • 교육: 우수사례 공유, 연계사업 정보 제공, 마을홍보관 운영지원 • 네트워킹: 워크숍으로 정보 공유, 마을 간 · 대학-마을 간 연대 촉진
효율화	• 컨설팅: 에너지설계사 · 컨설턴트 우선 지원 • 교육: 에너지진단 · 적정기술교육, 주택효율화 상담 · 시공교육 진행, 마을 내 전문인력 양성 • 재정지원: LED 조명 교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생산	• 컨설팅: 에너지생산여건 등 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지원 • 교육: 에너지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방안 교육 • 재정지원: 주택 · 미니태양광 설치자금 지원 • 네트워킹: 시민햇빛발전소 등 생산자 협동조합 발굴 및 조직화

- 예산액: 2015년 기준 48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의 예산은 2012년 200백만 원, 2013년 300백만 원, 2014년 380백만 원, 2015년 485백만 원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2-10] 에너지자립마을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에너지자립마을 (환경정책과)	7	200	11	300	15	380	29	485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6) 마을기업

- 사업 목적: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기업 육성
- 사업 내용: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비 및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행자부 매칭사업, 연 1회 4월 선정), 공간 임대 보증금 지원(연 1회 6월 선정),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등을 실시
 - 지원 규모: 1년차 최대 5천만 원, 2년차 최대 3천만 원
- 예산액: 2015년 기준 3,10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마을기업사업의 예산은 2012년 2,550백만 원, 2013년 4,798백만 원, 2014년 4,305백만 원, 2015년 3,100백만 원으로 규모가 점차 감소

[표 2-11] 마을기업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8	2,550	50	4,798	29	4,305	9	3,100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7) 마을예술창작소

- 사업 목적: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사업 내용: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원 대상: 신규 운영지원과 3년차 이상 지원으로 구분
 - 신규 운영지원: 주민자율형 사업만 해당되고, 마을문화 공예공방창작소 유형과 마을문화 샵터, 쉼터, 장터 창작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3년차 이상 지원: 주민자율형과 민간협력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규모: 신규는 연 최대 2,00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3년차 이상은 연 1,0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예산액: 2015년 기준 653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예산은 2012년 1,941백만 원, 2013년 1,481백만 원, 2014년 695백만 원, 2015년 653백만 원으로 감소

[표 2-12] 마을예술창작소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23	1,941	25	1,481	23	695	27	653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8) 마을미디어

- 사업 목적: 시민 미디어 이해 및 확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
- 사업 내용: 마을미디어교육, 매체제작 등 주민주도의 온라인 마을방송 운영 등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 [표 2-13]과 같음

[표 2-13] 마을미디어의 사업 세부내용

분야	체험형	아이템형	복합형	매체형
내용	마을미디어의 체험을 위한 모임 및 캠페인	주민 교류 및 마을공동체 소통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프로젝트	미디어 교육 과정 수료 이후 아이템형 또는 매체형 미디어 제작 지원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미디어 제작 지원
신청대상	주민 모임 (3인 이상) 또는 단체			
지원	1,000천 원	5,000천 원	9,000천 원	15,000천 원
규모	10개소	6개소	9개소	10개소
활동 예시	- 마을미디어 학습모임 -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캠페인 - 마을 공개 방송 등	- 마을영화 제작 - 마을극장 운영 - 마을 맵핑 또는 아카이빙 - 소식지 제작 등	미디어 읽기 교육을 통한 마을방송/신문 제작 및 마을미디어 동아리 운영 등	- 공동체 라디오 - 마을 신문 - 마을방송 - 마을잡지 등

○ 예산액: 2015년 기준 71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마을미디어사업의 예산은 2012년 500백만 원, 2013년 615백만 원, 2014년 615백만 원, 2015년 715백만 원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2-14] 마을미디어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46	500	51	615	41	615	48	715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9) 우리마을지원사업

- 사업 목적: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시민 의식을 확대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
- 사업 내용: 우리마을지원사업은 크게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의제 또는 융복합의제의 마을공동체 ‘활동사업’과 특정 공간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

음 [표 2-15]와 같음

- 지원 대상¹¹⁾: 3명 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표 2-15]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사업 세부내용

구분	지원 목표(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 금액	최고 금액	
활동 지원	100			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신규	90	7백만 원	15백만 원	
2년차 ~	10	6백만 원	15백만 원	
공간 지원	50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임대료 제외) ※ 2년차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신규	15	35백만 원	50백만 원	
2년차 ~	35	15백만 원	20백만 원	

- 예산액: 2015년 기준 3,522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예산은 2013년 2,430백만 원, 2014년 4,048백만 원, 2015년 3,522백만 원임

[표 2-16] 우리마을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		2013		2014		2015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체담당관)	82	-	156	2,430	141	4,048	145	3,522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11)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기존 실·국 및 자치구 마을 사업 경험에 있는 모임

(10)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 사업 목적: 교사와 학부모, 지역의 교육단체 및 주민모임이 연계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통합적인 돌봄·교육 생태계 조성
- 사업 내용: 아동/청소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및 주민모임 지원으로 모임 지원을 통한 주체 발굴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발굴 및 실행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 [표 2-17]과 같음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발굴 및 실행: 지원 대상(마을학교 사업 의지가 있는 학교 4곳 공모), 지원 내용(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발굴 및 실행 지원, 간사파견), 지원 금액(지원대상별 5천만 원 내외)
- 예산액: 2015년 기준 1,00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

[표 2-17]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사업 세부내용

사업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원 건수 및 금액
주민모임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 및 단체	•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 강사 성장 과정 지원	공모 및 심사·선정	80건 ~ 100건 (공모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교사모임 지원사업		• 동아리 지도교사, 교과과정 재구성 연구 모임 지원		
주민모임과 교사모임의 상호학습지원		• 자치구별 집합컨설팅을 통해 모임 정례화를 통해 모임 정례화	만남을 통한 모임 간 연결 지원	

[표 2-18]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보조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액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담당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사업 선정 건수	예산액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공동체담당관)	-	-	-	-	-	-	68	1,000

출처: 서울시, 2016, 업무현황, pp.5~13

(11) 마을연계망 지원사업

- 마을연계망 지원사업에는 크게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주민모임 컨설팅 지원단 공모, 마을인연맺기 사업으로 구분
-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 사업 내용: 주민모임의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등을 지급(실무책임자의 활동수당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사업기간 중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은 지급이 불가)
 - 지원 금액: 연간 7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민모임 컨설팅 지원단 공모
 - 사업 내용: 주민모임 간 연계사업 참여자의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모임 간, 연계사업 참여자 간 자치구와 연계하거나 미참여자를 발굴하는 사업
 - 지원 금액: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에 있어서 5천만 원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 마을인연맺기 사업
 - 사업 내용: 마을공동체 간 결연을 맺고(서울 마을 ↔ 전국 지역마을) 우호 교류 활동을 지원
 - 지원 금액: 사업 규모와 모임 정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이 지원(마을공동체 간 교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비를 지원)

3_기반조성사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1) 의미 및 구분

- 기반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도모 수단으로서 주요 사업은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이 있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주민과 서울시 사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필요한 도움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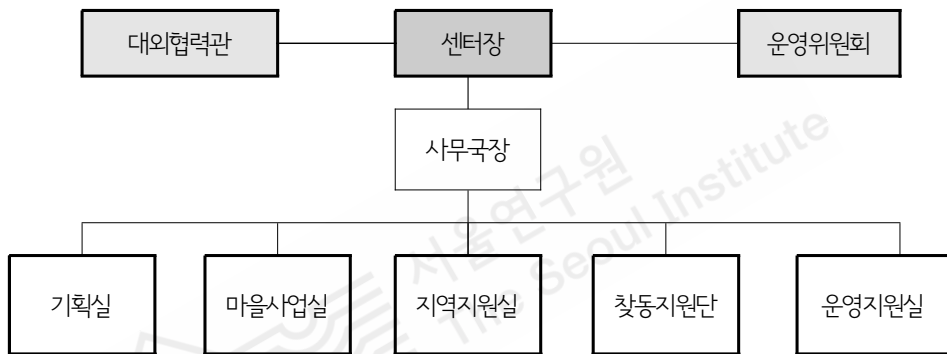
-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센터(이하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를 운영하는 사업임.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을 연계하는 사업을 담당

2) 사업 소개

(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 설립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 제26조
- 설립 목적: 민관연계 및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 행정(서울시)과 주민(민간)의 중간 매개자 역할의 필요성으로 2012년 8월 개소되어 서울시 은평구에 1개소가 운영 중
- 위탁 형태: 사단법인 ‘마을’ 민간위탁
- 주요 업무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정책과제연구(▲마을자산화 전략연구,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과정 모델링 통합연구, ▲도시와 주체 특성에 적합한 2기 마을살이 지원 방안 연구, ▲현장 주체 참여형 포럼 연구), 마을살이 작은 연구,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측정, 종합 토론회, 유사 정책 조사, 보고서 발간 및 자문 등
 -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 마을활동가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마을사업지기 성장교육, ▲자생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국외사례 연구, ▲마을지원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청년활동가 발굴 및 양성), 마을활동가 통합지원과정(▲마을실천대학, ▲마을·부문 간 융합활동가 교육), 교육 네트워크 및 아카이브 구축(▲센터 내·외부 교육사업 정리 및 네트워크, ▲교육콘텐츠 개발 및 아카이브)
 -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지원, 중간지원조직협의회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홍보 및 사례 확산(▲홍보물 제작, ▲정보자료실 등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마을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 사업 연계망 구축

-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마을학교모임지원사업, 마을학교상생프로젝트, 서울시 교육청 협치, 한-네팔 국제교류, 사업단 운영,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지원: 자치구 민간플랫폼 형성지원
 -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단위사업 지원
 - 근린생태계조성(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지원: 거점 공간중심 거버넌스 특화사업, 소규모 지역 거버넌스 시범사업
- 조직 구성: 2017년 3월 현재 총 53명(정원 내 27명, 정원 외 26명)의 근로자가 상 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 예산액
-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1,685백만 원에서 2017년 5,218백만 원으로 증가
 - 2017년 예산 중 인건비는 1,364백만 원, 운영비는 500백만 원, 사업비는 3,354백만 원을 차지

[표 2-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1,685	2,285	2,561	2,631	5,197	5,218

출처 1(2012~2013): 서울시(2015), 사람사는 재미 마을공동체

출처 2(2014~2017): 서울시(2017), 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현황

(2)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

-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소가 운영 중
- 설립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2016년 11월)
- 설립 목적: 자치구와의 협업을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 주요 업무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공모사업지원,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을 담당

[표 2-20]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사업 내용

	기본사업	자체사업
주민 등장	내방(전화)상담	공모사업 설명회, 마을기업 기본교육 등
	찾아가는 마을강좌(모니터링)	
	자치구 교육 사업 협력	
주민 연결	주민모임형성사업 지원(심사/컨설팅/평가)	민간마을넷 운영 지원, 다양한 의제 마을넷 구성, 자치구 집담회, 활동가 교육 등
	의제 마을넷(청년, 마을경제 등)	
	마을사업지기 합동 행사	
	공모사업 종료자 현황조사	
	자치구 마을지원활동가 협업체계 구축	
	마을사업지기 촉진교육	
	자치구 공모사업 협조	
마을 성장	동네마을넷 기초조사	동네마을넷 활성화, 마을계획 수립 등
거버넌스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자치구의회 간담회, 민관워크숍 등

출처: 서울연구원, 2016, 마을공동체, 살맛 나는 도시, p.83

- 조직 형태: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은 ‘센터형’과 ‘민간형(네트워크 지원형)’으로 구분
 - 센터형은 자치구 직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
 - 민간형(네트워크 지원형)은 자치구 직영의 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 중 역량이 높은 민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
 - 2013년 6개 자치구 지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 22개, 2016년 23개의 자치구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 중
 -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별 상근인력은 개소당 평균 2명 ~ 5명이 활동

[표 2-21]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현황

연도 및 운영유형		자치구	교부금액 (백만 원)	자치구명
2013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6	117	-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계	6	117	
2014	센터형	민간위탁형	2	- 서대문구, 성북구 - 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자치구 직영형	4	
	민간형		12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계		18	1,150
2015	민간형		15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센터형	민간위탁형	2	- 서대문구, 성북구 - 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종로구
		자치구 직영형	5	
	계		22	1,261
2016	민간형		17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 용산, 서초는 마을지원단 형태로 운영)
	센터형	민간위탁형	2	- 서대문구, 성북구 - 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종로구, 노원구
		자치구 직영형	6	
	계		23	1,399

출처 1(2012~2013): 서울시(2015), 사람사는 재미 마을공동체(2011~2015)

출처 2(2014~2016): 서울시(2017), 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현황

03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

- 1_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개요
-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 3_소결

03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유형 분석

1_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개요

1)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구축

-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유형 분석을 위해 각 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지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구축함
 - 각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통해 인건비 지출 총액은 파악이 가능하나 일자리와 일거리의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
 - 즉, 정산보고서를 통해서는 일자리·일거리가 몇 개인지, 임금은 얼마인지, 활동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등은 파악이 불가능
- 주민제안사업의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각 사업별 지출결의서를 원자료로 활용함
 -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단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에 도입
 - 각 사업의 대표자(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에 앞서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마을사업지기(또는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비 집행 시 법적 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작성. 지출결의서 상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
 - 카드 사용 금액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 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용이
- 단, 지출결의서에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출한 모든 거래 내역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인건비성 경비 내역은 연구진이 해당 내역만을 추출하여 연구 분석틀에 맞게 재구성 및 재입력해야 함

- 원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기초자료 항목은 다음 [표 3-1]과 같음
 - 기본 현황: 단위사업명, 보조사업명, 단체명, 보조사업자명(마을사업지기), 사업 기간(시작일 ~ 종료일), 사업 예산액(총액=보조금+자부담금), 사업 집행 금액(총액=보조금+자부담금) 등
 - 인건비 지출 현황: 사용처(이름), 예산 출처(보조금, 자부담금), 활동 유형, 세부 활동 내역(활동 내역 구분), 활동 기간(시작일, 종료일), 활동 횟수(회/1일), 임금(원/1회), 보조사업별 임금 지출 금액(총액=보조금+자부담금), 보조사업별 실제 활동 인력 수(보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 인력 수, 자부담금에서 임금이 지급된 인력 수, 보조금과 자부담금 모두에서 임금이 지급된 중복 인력은 제외함), 참여인력(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보조금+자부담금), 전체 활동 기간(개월), 실제 활동 일수(일), 일자리 · 일거리 해당 여부, 최저임금(월급, 일급) 해당 여부 등
 - 참여 인력별 투입 시간은 미입력된 사례가 많아 시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불가

[표 3-1]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항목 및 세부 내용

구축 항목	세부 내용	
사업의 기본 현황 (7)	- 단위사업명 - 보조사업명 - 단체명 - 보조사업자명(마을사업지기)	- 사업 기간(시작일~종료일) - 사업 예산액(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 사업 집행금액(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인건비 지출 현황 (14)	- 사용처(이름) - 예산 출처(보조금, 자부담금) - 활동 유형 - 세부 활동 내역(활동 내역 구분) - 활동 기간(시작일, 종료일) - 활동 횟수(회/1일) - 임금(원/1회) - 보조사업별 임금 지출 금액 (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 보조사업별 실제 활동 인력 수 - 참여인력(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 전체 활동 기간(개월) - 실제 활동 일수(일) - 일자리 · 일거리 해당 여부 - 최저임금(월급, 일급) 해당 여부

2) 6개 단위사업(보조사업 238개)을 대상으로 코딩 및 분석

-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은 보조사업의 마을사업지기가 서울시의 ‘예산 편성 기준표 ([표 3-2] 참고)’를 바탕으로 작성함. 인건비 또한 예산 편성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음
 - 예산 편성 기준표에서 인건비 항목은 사업지원조직, 강사 및 강사보조 수당, 회의참석 및 심사 수당, 활동 수당, 원고작성 수당이 해당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란 마을생태계지원단처럼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¹²⁾
 - ‘강사 및 강사보조 수당’이란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 ‘회의 참석 및 심사 수당’은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 또는 심사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 ‘활동수당’은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활동수당으로 편성
 - ‘원고작성 수당’이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상이하고, 보조사업별로도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상에는 예산 편성 기준표에서 제시된 인건비 항목 외에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여 코딩 시 어려움이 발생함. 인건비 지급 기준 또한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예산 편성 기준표 외의 항목(예): 미술 감독, 공연 기획, 영화제 포토그래퍼, 번역, 홍보 작업, 상근 직원, 단순인건비 등

¹²⁾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이하 인건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서울시, 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pp.54~56’에서 인용

[표 3-2] 2015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편성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업 지원조직	- 월 단위	- 1일 8만 원 이내	- 업무 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 하여 적정 금액 지급
	공간운영	- 월, 일, 시간 단위	- 적정 금액	- 전체 보조금의 50% 이내
강사 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만 원 - 20만 원	- 강의 시간 산출 시 30분 미만 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 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 2시간 초과 되는 강사 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만 원 - 8만 원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수당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27.5만 원 - 6인~10인 40만 원 - 11인 이상 55만 원	- 신규 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 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 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 는 지급하지 않음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5만 원 - 6인~10인 50만 원 - 11인 이상 70만 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만 원 - 15만 원	- 1일 1회에 한해 지급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 여자에게 지급 불가
활동 수당		- 1시간 기준	- 1만 원	- 1일 8시간 이내 책정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 상 지급 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만 원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 미만) - 시내여비(4시간 이상) - 시외여비	- 1만 원 - 2만 원 - 실비 정산	-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 공료는 자부담 사업비로만 집행 가능(단, 마을생태계지 원단 등 사업지원조직은 보 조금 집행 가능)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 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상한 4만 원)	
식비 &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상한 7천 원)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 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상한 3천 원)	

출처: 서울시(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pp.60~61

- 위와 같은 이유로 연구진이 보조사업의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내역을 추출하고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서울시 본청 실·국 단위사업 6개를 대상으로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일거리를 분석함
 - 6개 단위사업: ① 공동육아,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③ 마을기업, ④ 마을예술창작소,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⑥ 마을연계망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상 6개 단위사업의 실제 보조사업 개수는 257개로 조사됨. 이 중 사업명이 중복되면서 지출결의서가 없는 사업, 인건비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사업¹³⁾은 분석에서 제외함. 최종적으로 238개만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됨.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 개수는 다음 [표 3-3]을 참고

[표 3-3] 연구 대상 단위사업의 보조사업 개수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상 등록 현황(개)	분석 유효사업(개)	분석 유효사업(%)
① 공동육아	43	42	17.6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9	18	7.6
③ 마을기업	9	8	3.4
④ 마을예술창작소	33	28	11.8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9	101	42.4
⑥ 마을연계망	44	41	17.2
합 계	257	238	100.0

13) 마을기업의 보조사업 중 공사시설비 명목으로 예산 전액을 지출한 사업이 있음. 공사시설비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합산되어 있고 인건비만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함

3)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구분 기준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지칭하는 일자리는 사회보험료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 주민제안사업은 1인 한 달 총합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월 25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 위치를 ‘일자리’, 나머지 월 2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 위치를 ‘일거리’로 분류함
 - 월 2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미대상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1) 사업예산

(1) 총액 및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예산

- 6개 단위사업(보조사업 238개)의 예산 총액은 3,912백만 원으로 조사됨. 이는 2015년 전체 주민제안사업 예산액 11,137백만 원 중 35.1%를 차지하는 수준임
-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 총액을 비교해보면 우리마을지원사업이 1,64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225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예산 총액 비교: 우리마을지원사업 1,647백만 원 > 공동육아 710백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623백만 원 > 마을기업 403백만 원 > 마을연계망 304백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225백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사업예산 총액이 타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보조사업의 개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우리마을지원사업의 보조사업 개수가 다른 사업과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의제 또는 융 · 복합 의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임

- 보조사업의 개수가 단위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단위사업 간 비교를 위하여 보조사업 1개당 사업 예산(단위사업별 예산 총액/단위사업별 보조사업 개수)을 알아봄. 그 결과 마을기업이 50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마을연계망이 7백만 원으로 가장 낮아 사업예산 총액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음
 - 보조사업 1개당 사업 예산 비교: 마을기업 50백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22백만 원 > 공동육아 17백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 16백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13백만 원 > 마을연계망 7백만 원
- 마을기업 사업의 경우 이익 추구하고 동시에 공동의 지역 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마을연계망은 모임 간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단위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고 ‘활동’보다는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음

[표 3-4]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예산 비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개수(개)	사업 총 예산(원)			보조사업 1개당 사업 예산(원)
		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① 공동육아	42	710,178,331	621,935,096	88,243,235	16,909,008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225,140,480	208,550,000	16,590,480	12,507,804
③ 마을기업	8	403,440,000	340,000,000	63,440,000	50,430,000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623,086,380	492,250,000	130,836,380	22,253,085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1,646,599,100	1,371,123,000	275,476,100	16,302,961
⑥ 마을연계망	41	303,991,000	290,111,000	13,880,000	7,414,415
합 계	238	3,912,435,291	3,323,969,096	588,466,195	-
평 균	40	652,072,549	553,994,849	98,077,699	-

(2) 예산 출처

- 주민제안사업 예산 출처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나누어짐. 6개 단위사업의 예산 총액에서 보조금 비중은 85.0%로 자부담금 비중 15.0%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제안사업은 서울시 예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3,912백만 원(100.0%) = 보조금 3,324백만 원(85.0%) + 자부담금 588백만 원(15.0%)
- 주민제안사업의 대부분은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 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위의 결과에서 자부담금 비중이 15%로 조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중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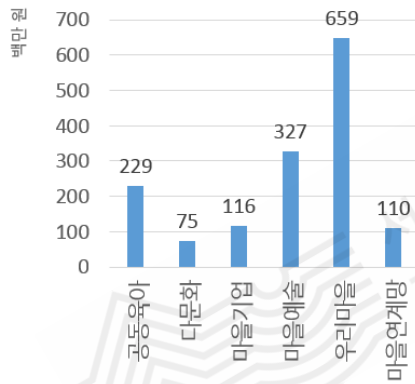
2) 인건비성 경비

(1) 총액 및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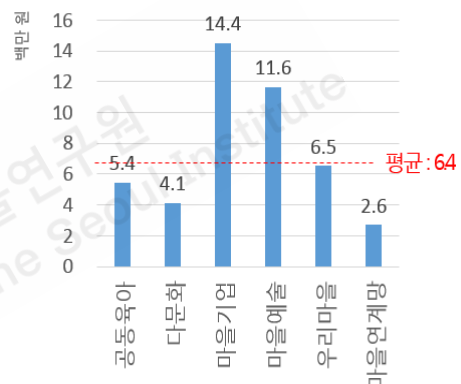
- 사업 총 예산 3,912백만 원 중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1,516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
-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우리마을지원사업이 65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75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인건비성 경비 또한 보조사업 개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수치 비교 시 주의가 요구됨
 - 단위사업별 인건비 총액 비교: 우리마을지원사업 659백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327백만 원 > 공동육아 229백만 원 > 마을기업 116백만 원 > 마을연계망 110백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75백만 원
-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단위사업별 인건비 총액/보조사업 개수)는 6.4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 단위사업별로 비교해보면 마을기업이 14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마을연계망이 3백만 원으로 가장 낮아 사업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 비교: 마을기업 14백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12백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 7백만 원 > 공동육아 5백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4백만 원 > 마을연계망 3백만 원
- ‘마을기업’은 인건비 총액이 6개 단위사업 중 4번째로 낮은 사업이지만 보조사업당 평균 인건비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타 사업보다 상근 인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3-5]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비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개수(개)	인건비성 경비 총액(원)			보조사업 1개당 인건비 예산(원)
		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① 공동육아	42	229,111,747	204,079,367	25,032,380	5,455,042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74,505,727	73,240,247	1,265,480	4,139,207
③ 마을기업	8	115,815,507	80,738,212	35,077,295	14,476,938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326,764,052	265,183,366	61,580,686	11,670,145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659,365,915	624,508,662	34,857,253	6,528,375
⑥ 마을연계망	41	110,173,946	106,978,746	3,195,200	2,687,169
합 계	238	1,515,736,894	1,354,728,600	161,008,294	(평균) 6,368,642



[인건비 총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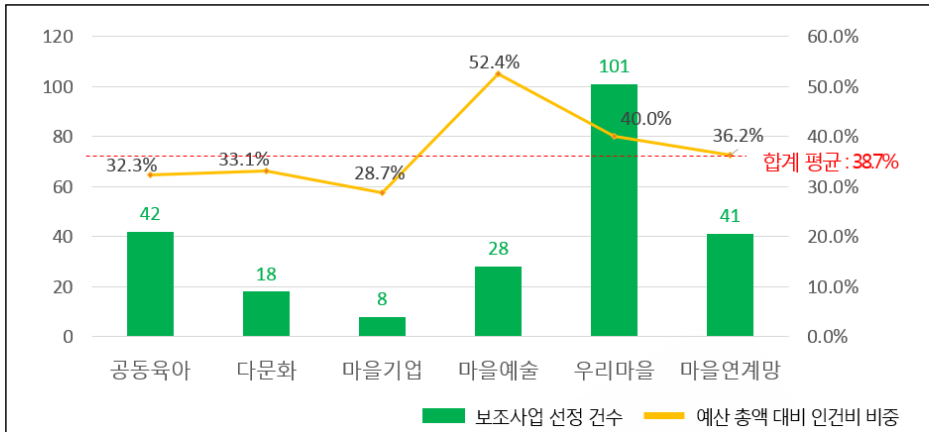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인건비 비교]

(2) 인건비 비중

- 사업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위사업 중 인건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52.4%)을 인건비로 지출함.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인건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업의 특성상 문화 활동 준비 및 공유 행사가 많고 그에 따른 소요 인력이 타 사업보다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반면 마을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음

- 단위사업별 인건비 비중 비교: 마을예술창작소 52.4% > 우리마을지원사업 40.0% > 마을연계망 36.2% > 다문화마을공동체 33.1% > 공동육아 32.3% > 마을기업 28.7%



[그림 3-1]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 비중 비교

-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비중은 보조사업의 개수와 무관하게 최소 20%대부터 최대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인건비성 경비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인건비 출처

- 인건비 총액 1,516백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과 자부담금에서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단 인건비 중 보조금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주민제안사업의 인건비는 서울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건비 총액 1,516백만 원(100.0%) = 보조금 1,355백만 원(89.4%) + 자부담금 161백만 원(10.6%)
-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출처를 비교해보면 다문화마을공동체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98.3%로 가장 높았고 마을기업이 69.7%로 가장 낮았음
 - 인건비의 보조금 의존도 비교: 다문화마을공동체 98.3% > 마을연계망 97.1% > 우리마을지원사업 94.7% > 공동육아 89.1% > 마을예술창작소

81.2% > 마을기업 69.7%

- 마을기업의 인건비 보조금 의존도는 70% 미만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9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3-6]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인건비 출처 비중 비교

구 분	보조사업 개수(개)	인건비성 경비(원)		
		총액	보조금	자부담금
합 계	238	1,515,736,894	1,354,728,600	161,008,294
		100.0%	89.4%	10.6%
① 공동육아	42	229,111,747	204,079,367	25,032,380
		100.0%	89.1%	10.9%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74,505,727	73,240,247	1,265,480
		100.0%	98.3%	1.7%
③ 마을기업	8	115,815,507	80,738,212	35,077,295
		100.0%	69.7%	30.3%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326,764,052	265,183,366	61,580,686
		100.0%	81.2%	18.8%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659,365,915	624,508,662	34,857,253
		100.0%	94.7%	5.3%
⑥ 마을연계망	41	110,173,946	106,978,746	3,195,200
		100.0%	97.1%	2.9%

3) 참여 인력(임금근로자)

(1) 참여 인력 수

- 일자리·일거리 유형 분석을 위해 6개 단위사업에 참여한 인력(임금근로자)을 조사한 결과 총 2,732명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95.0%에 해당하는 2,596명의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인원 238명분은 자부담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 단위사업별로 비교해보면 보조사업 개수가 가장 많았던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참여 인력이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 개수가 가장 적었던 마을기업의 참여 인력은 105명(보조사업 8개)으로 가장 적었음
- 참여 인력 비교: 우리마을지원사업 1,035명 > 마을예술창작소 426명 > 공동육아 420명 > 마을연계망 334명 > 다문화마을공동체 142명 > 마을기업 105명

[표 3-7]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임금근로자) 비교

구 분	실제 참여 인력 (A=B+C-D)		보조금(B)		자부담금(C)		중복인력 (보조금+자부담금, D)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합 계	2,732	100.0	2,596	95.0	238	8.7	102	3.7
① 공동육아	420	100.0	403	96.0	39	9.3	22	5.2
② 다문화 마을공동체	142	100.0	138	97.2	7	4.9	3	2.1
③ 마을기업	105	100.0	89	84.8	28	26.7	12	11.4
④ 마을예술 창작소	426	100.0	386	90.6	63	14.8	23	5.4
⑤ 우리마을 지원사업	1,305	100.0	1,253	96.0	91	7.0	39	3.0
⑥ 마을연계망	334	100.0	327	97.9	10	3.0	3	0.9
평 균			433		4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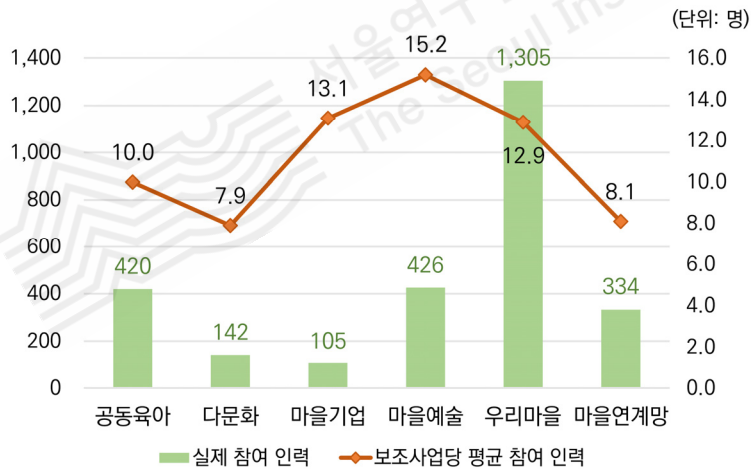
(2)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인력 수

-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인력은 11.3명으로 조사됨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우리마을지원사업이 평균보다 높았고, 다문화마을공동체, 마을연계망, 공동육아가 평균보다 낮게 조사됨
-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인력 수 비교: 마을예술창작소 15.2명 > 마을기업 13.1명 > 우리마을지원사업 12.9명 > 공동육아 10.0명 > 마을연계망 8.1명 > 다문화마을공동체 7.9명

- 우리마을지원사업이 단위사업별 참여 인력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조사업 1개당 평균 참여 인력 수는 마을예술창작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8]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임금근로자) 비교

구 분	참여 인력(명)	보조사업 개수(개)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명)
합 계	2,732	238	11.3
① 공동육아	420	42	10.0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42	18	7.9
③ 마을기업	105	8	13.1
④ 마을예술창작소	426	28	15.2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305	101	12.9
⑥ 마을연계망	334	41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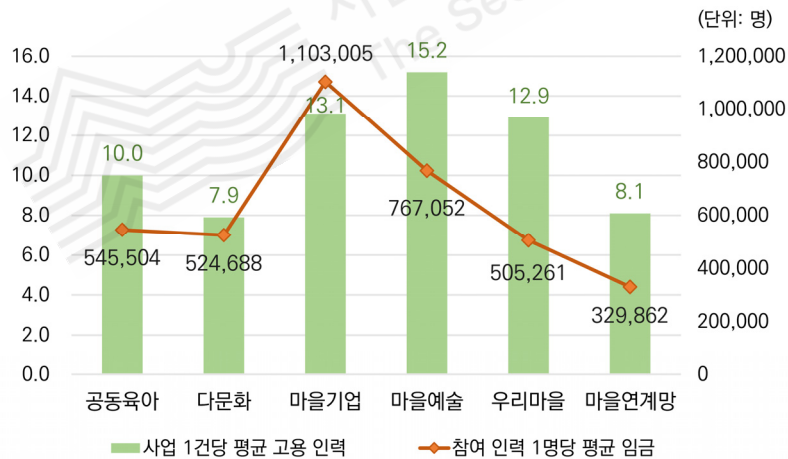
(3) 참여 인력당 평균 임금

- 사업 기간 동안 참여 인력당 지급된 평균 인건비는 55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단위사업별로 비교해보면 마을기업이 110만 원 수준으로 최다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반면 마을연계망은 33만 원 수준으로 최저를 기록함

- 참여 인력당 평균 임금 비교: 마을기업 110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77만 원 > 공동육아 55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52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 51만 원 > 마을연계망 33만 원

[표 3-9]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임금근로자)당 평균 임금 비교

단위사업명	사업 기간 (평균, 개월)	인건비(원)	참여 인력(명)	참여 인력당 평균 임금(원)
합 계	-	1,515,736,894	2,732	554,809
① 공동육아	11	229,111,747	420	545,504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7	74,505,727	142	524,688
③ 마을기업	5	115,815,507	105	1,103,005
④ 마을예술창작소	9	326,764,052	426	767,052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8	659,365,915	1,305	505,261
⑥ 마을연계망	5	110,173,946	334	329,862



- 마을기업은 타 사업과 비교해서 보조사업당 평균 참여 인력이 많고, 인건비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이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마을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일정 부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4) 일자리 · 일거리 유형별 분석

-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 수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함

(1) 일자리 · 일거리 발생 개수

- 전체 참여 인력 2,732명 중 일자리는 627개(23.0%), 일거리는 2,105개(77.0%)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단위사업별로 참여 인력 대비 일자리 발생 비중을 비교해보면 마을기업의 일자리 발생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마을연계망은 15.0%로 가장 낮았음
 - 일자리 발생 비중 비교: 마을기업 44.8% > 다문화마을공동체 35.2% > 마을예술창작소 30.0% > 우리마을지원사업 21.0% > 공동육아 18.6% > 마을연계망 15.0%

[표 3-10]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 개수 비교

구 분	보조사업 개수	실제 참여 인력		기준: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일자리 (25만 원 초과/월)		일거리 (25만 원 이하/월)	
		인원(명)	구성비(%)	개수(개)	비중(%)	개수(개)	비중(%)
합 계	238	2,732	100.0	627	23.0	2,105	77.0
① 공동육아	42	420	100.0	78	18.6	342	81.4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8	142	100.0	50	35.2	92	64.8
③ 마을기업	8	105	100.0	47	44.8	58	55.2
④ 마을예술창작소	28	426	100.0	128	30.0	298	70.0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01	1,305	100.0	274	21.0	1,031	79.0
⑥ 마을연계망	41	334	100.0	50	15.0	284	85.0

(2) 일자리 · 일거리 인건비 총액

- 전체 인건비 1,516백만 원 중 일자리에 해당하는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014백만 원(66.9%)으로 조사되었고, 일거리에 해당하는 인력에게는 총 501백만 원(33.1%)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 개수는 전체의 23.0%로 1/4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자리에 지급된 임금은 전체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단위사업별로 일자리 · 일거리의 인건비 총액을 살펴보면 6개 사업 모두 일거리보다 일자리에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마을기업은 전체 인건비 중 90% 이상이 일자리에 배분됨

[표 3-11]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인건비 총액 비교

구 분	보조 사업 개수	총 인건비		기준: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일자리 (25만 원 초과/월)		일거리 (25만 원 이하/월)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합 계	238	1,515,736,894	100.0	1,014,266,491	66.9	501,470,403	33.1
① 공동육아	42	229,111,747	100.0	131,155,653	57.2	97,956,094	42.8
② 다문화 마을공동체	18	74,505,727	100.0	53,908,930	72.4	20,596,797	27.6
③ 마을기업	8	115,815,507	100.0	104,182,507	90.0	11,633,000	10.0
④ 마을예술 창작소	28	326,764,052	100.0	244,159,168	74.7	82,604,884	25.3
⑤ 우리마을 지원사업	101	659,365,915	100.0	422,118,273	64.0	237,247,642	36.0
⑥ 마을연계망	41	110,173,946	100.0	58,741,960	53.3	51,431,986	46.7

(3)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평균 임금(사업기간 전체)

- 참여 인력 1명당 평균 임금(사업기간 전체)은 일자리가 161.8만 원, 일거리가 23.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 기준, 참여 인력 1명당 평균 임금(사업기간 전체)이 가장 높은 단위사업은 마을기업이었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일자리 1개당 평균 임금 비교: 마을기업 222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191만 원 > 공동육아 168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 154만 원 > 마을연계망 117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108만 원

- 일거리 기준, 참여 인력 1명당 평균 임금(사업기간 전체)이 가장 높은 단위사업은 공동육아였고, 마을연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일거리 1개당 평균 임금 비교: 공동육아 28.6만 원 > 마을예술창작소 27.7만 원 > 우리마을지원사업 23.0만 원 > 다문화마을공동체 22.3만 원 > 마을기업 20.0만 원 > 마을연계망 18.1만 원

[표 3-12]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평균 인건비(사업기간 전체) 비교

구 분	일자리			일거리		
	인원(명)	총액(원)	1개당 평균 인건비(원)	인원(명)	총액(원)	1개당 평균 인건비(원)
합 계	627	1,014,266,491	1,617,650	2,105	501,470,403	238,228
① 공동육아	78	131,155,653	1,681,483	342	97,956,094	286,421
② 다문화 마을공동체	50	53,908,930	1,078,179	92	20,596,797	223,878
③ 마을기업	47	104,182,507	2,216,649	58	11,633,000	200,569
④ 마을예술 창작소	128	244,159,168	1,907,494	298	82,604,884	277,198
⑤ 우리마을 지원사업	274	422,118,273	1,540,578	1,031	237,247,642	230,114
⑥ 마을연계망	50	58,741,960	1,174,839	284	51,431,986	181,099

(4)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평균 일급 및 월급

- 일자리 1개당 평균 일급은 145,152원으로 조사되었고, 일거리 1개당 평균 일급은 109,099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반면, 일자리 1개당 평균 월급은 626,351원으로, 일거리 1개당 평균 월급인 132,290원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임
- 일자리의 1개당 평균 일급은 14.5만 원이고, 일거리 1개당 평균 일급은 10.9만 원으로 1.3배 차이 발생
- 반면 일자리 1개당 평균 월급은 62.6만 원이고, 일거리 1개당 평균 월급은 13.2만 원으로 일자리의 월급이 4.7배 높게 나타남

[표 3-13]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평균 일급 및 월급 비교

구 분	평균 일급(원)		평균 월급(원)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일거리
평 균	145,152	109,099	626,351	132,290
① 공동육아	169,127	98,988	521,958	123,200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73,217	121,235	723,876	128,435
③ 마을기업	120,909	147,292	902,690	170,069
④ 마을예술창작소	126,220	90,970	549,397	124,244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30,812	99,152	518,958	125,980
⑥ 마을연계망	150,628	96,956	541,226	121,813

-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와 일거리의 임금 수준을 확인하고자 ‘최저임금(2015년)’과 비교해봄. 그 결과 주민제안사업의 참여 인력이 받은 일급은 최저임금보다 2.8배 이상 높은 반면 월급은 1/3 수준으로 낮음
 - 일자리와 일거리를 합산한 평균 일급은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 일급과 비교하면 2.8배 이상 높은 수준(※ 2015년 최저임금 일급 44,640원)
 - 일자리와 일거리를 합산한 평균 월급은 37.9만 원으로 최저임금 월급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 2015년 최저임금 월급 1,166,220원)

[표 3-14]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 전체 일자리 · 일거리의 임금 수준(평균 일급, 월급) 비교

구 분	평균 일급(원)			평균 월급(원)		
	일자리	일거리	평균	일자리	일거리	평균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 전체	145,152	109,099	127,126	626,351	132,290	379,321

- 최저임금 비교 결과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와 일거리 평균 일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급에 비해 월급은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주민제안사업의 사업기간이 짧고, 참여 활동유형도 강사, 원고작성, 회의참석 등으로 비상근이면서 몇 번의 참여가 전부인 간헐적 참여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5)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참여(근로) 일수

-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평균 참여(근로) 일수를 조사한 결과 일자리는 평균 29일인 반면 일거리는 4일로 조사되어 일자리와 일거리 간 약 7.8배 차이를 보임
- 단위사업별로 일자리 해당 인력의 참여(근로) 일수를 살펴보면 마을기업이 56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11일로 가장 짧았음
 - 일자리 1개당 참여 일수 비교: 마을기업 56일 > 마을예술창작소 45일 > 공동육아 26일 > 우리마을지원사업 22일 > 마을연계망 15일 > 다문화마을공동체 11일
- 일거리 해당 인력의 참여 일수를 비교해보면 마을예술창작소가 9일로 가장 길었지만 일자리의 최저 참여일수보다도 짧게 나타났고, 다문화마을공동체가 2일로 일거리 중 가장 짧았음
 - 일거리 1개당 참여 일수 비교: 마을예술창작소 9일 > 공동육아 5일 > 마을기업,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연계망 각각 3일 > 다문화마을공동체 2일

[표 3-15]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1개당 참여(근로) 일수 비교

구 분	참여 일수(일)		비고 (일자리/일거리)
	일자리	일거리	
평 균	29	4	7.8배
① 공동육아	26	5	5.2배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1	2	5.5배
③ 마을기업	56	3	18.7배
④ 마을예술창작소	45	9	5.0배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22	3	7.3배
⑥ 마을연계망	15	3	5.0배

(6) 활동 유형

- 활동 유형별로 참여 인력 및 인건비 총액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일거리 모두에서 강사(주강사), 강사(기타), 공간운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인력 수 측면에서 ‘강사’에 해당하는 주강사, 보조강사, 공연/출강, 기타를 모두 합하면 일자리에서는 전체 대비 57.4%를, 일거리에서는 전체 대비 60.7%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일거리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공간운영’은 상대적으로 참여 인력 대비 높은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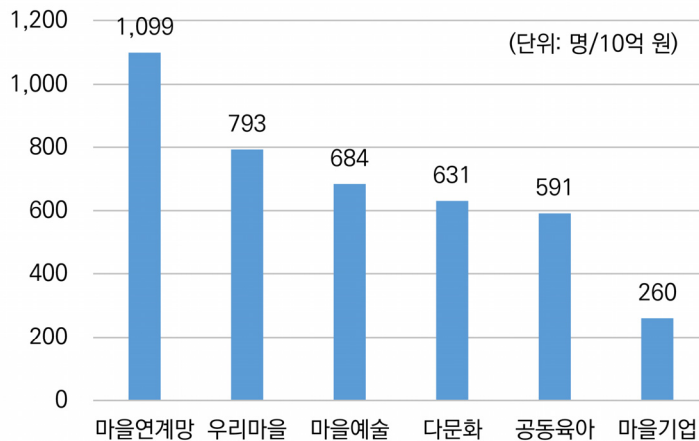
(단위: 개, %, 원)

활동 유형	일자리				일거리			
	참여 인력		인건비 총액		참여 인력		인건비 총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개수	비중	금액	비중
강사 (주강사)	132	21.1	98,945,260	9.8	361	17.1	84,315,040	16.8
강사 (보조강사)	28	4.5	26,930,000	2.7	118	5.6	28,542,499	5.7
강사 (공연/출강)	33	5.3	25,947,250	2.6	225	10.7	24,114,700	4.8
강사(기타)	166	26.5	205,077,937	20.2	575	27.3	157,232,996	31.4
소계	359	57.4	356,900,447	35.3	1,279	60.7	294,205,235	58.7
공간운영	100	15.9	365,621,460	36.0	105	5.0	84,619,084	16.9
활동 수당	43	6.9	70,706,000	7.0	508	24.1	66,760,496	13.3
회의 참석	9	1.4	5,505,000	0.5	70	3.3	15,529,997	3.1
원고 작성	8	1.3	3,300,000	0.3	12	0.6	1,800,000	0.4
사업 지원	17	2.7	41,009,882	4.0	21	1.0	10,432,000	2.1
상근직원	11	1.8	52,726,072	5.2	0	0.0	0	0.0
마을활동가	1	0.2	9,483,160	0.9	0	0.0	0	0.0
보육교사	1	0.2	12,121,040	1.2	0	0.0	0	0.0
단순인건비	16	2.6	28,258,150	2.8	13	0.6	3,602,000	0.7
심사 수당	0	0.0	0	0.0	13	0.6	2,650,000	0.5
공연	48	7.7	52,153,980	5.1	42	2.0	9,096,800	1.8
전시	2	0.3	1,984,800	0.2	13	0.6	6,624,800	1.3
시설공사비	7	1.1	5,445,000	0.5	2	0.1	480,000	0.1
기타	5	0.8	9,051,500	0.9	27	1.3	5,669,991	1.1
소계	268	42.7	657,366,044	64.6	826	39.2	207,265,168	41.3
합계	627	100.0	1,014,266,491	100.0	2,105	100.0	501,470,4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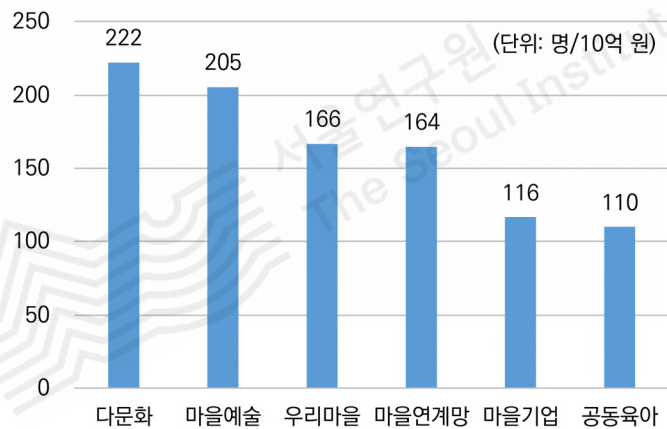
- 그 외 활동 유형별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면 일자리는 상근 직원, 공간운영, 사업 지원 분야에서 높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일거리에서는 공간운영, 전시, 사업 지원 분야에서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 해당 인력의 활동 유형별 평균 인건비: 상근 직원 4.8백만 원 > 공간운영 3.7백만 원 > 사업 지원 2.4백만 원 > ... > 회의 참석 0.6백만 원 > 원고 작성 0.4백만 원
 - 일거리 해당 인력의 활동 유형별 평균 인건비: 공간운영 0.8백만 원 > 전시 0.5백만 원 > 사업지원 0.5백만 원 > ... > 활동 수당 0.1백만 원 > 강사(공연/출강) 0.1백만 원

5) 일자리 · 일거리 생성 효과

- 단위사업별 일자리 · 일거리 발생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0억 원당 소요되는 참여 인력 수를 분석함
- 단위사업 중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우리마을지원사업’이었지만 예산 대비 사업 참여 인력(일자리+일거리) 발생 효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은 마을연계망,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다문화마을공동체, 공동육아, 마을기업 순인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일거리 발생 효과 비교(명/10억 원): 마을연계망 1,099 > 우리마을지원사업 793 > 마을예술창작소 684 > 다문화마을공동체 631 > 공동육아 591 > 마을기업 260
- 반면, 일자리만의 발생 효과를 분석하면 다문화마을공동체가 가장 높았고,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연계망, 마을기업, 공동육아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일거리 발생 효과와는 결과가 상이함
 - 일자리 발생 효과 비교(명/10억 원): 다문화마을공동체 222 > 마을예술창작소 205 > 우리마을지원사업 166 > 마을연계망 164 > 마을기업 116 > 마을기업 110



[그림 3-2]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 효과 비교



[그림 3-3] 주민제안사업 6개 단위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 비교

3_소결

- 2015년 주민제안사업 중 6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 일거리 발생 성과를 조사한 결과,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인건비로 15.16억 원(약 40%)을 사용하였고, 생성된 일자리 · 일거리는 총 2,732개로 이 중 일자리는 627개, 일거리는 2,105개를 차지함

-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를 타 산업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¹⁴⁾를 살펴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 = 최종 수요’라는 가정을 하고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와 비교함
 -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산업 및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할 경우 전업환산 기준 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
-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160.3(명/10억 원)이 도출됨.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41.0명/10억 원)보다도 약 4배가량 높은 수준
 -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5월 기준 가장 최신 연도인 2014년 자료를 활용
 - 주민제안사업과 비슷한 분야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41.0명/10억 원임
-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는 우수하지만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주민제안사업의 임금은 일급과 월급으로 구분 가능함. 일급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사업에 투입된 전체 참여 인력 중 약 79.0%에 해당하는 2,158개가 ‘최저임금 일급액’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표 3-17] 참고)
 - 참여 인력 1인당 일급여 산정 방법 = 1인당 총 급여 / 실제 참여일수
 - 참여 인력 1인당 월급여 산정 방법 = 1인당 총 급여 / (활동 전체일수/30일) 단, 활동 전체일수가 1일 ~ 29일에 해당할 경우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
- 그러나 ‘최저임금 월급액’ 이상인 것은 전체의 1.7%(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일급액’ 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인 79.0%와 큰 차이를 보임

1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접속 일자: 2017. 5. 18)

- 마지막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참여 일수와 연관되어 있음. 일거리의 경우 1인당 평균 참여 일수는 4일로 조사되었고 일자리의 참여 일수 또한 29일로 나타나 1개월도 채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7] 주민제안사업 일자리 · 일거리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일급, 월급) 해당 여부 비교
(단위: 명, %, 개)

구 분	참여 인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15년) ※ 주민제안사업의 분석시점과 동일한 연도로 적용			
			최저임금 일급액 이상 (>=44,640원)		최저임금 월급액 이상 (>=1,166,220원)	
	인원	구성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합 계	2,732	100.0	2,159	79.0	47	1.7
① 공동육아	420	100.0	318	75.7	4	1.0
② 다문화마을공동체	142	100.0	130	91.5	8	5.6
③ 마을기업	105	100.0	78	74.3	16	15.2
④ 마을예술창작소	426	100.0	291	68.3	8	1.9
⑤ 우리마을지원사업	1,305	100.0	1,064	81.5	10	0.8
⑥ 마을연계망	334	100.0	278	83.2	1	0.3

04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

- 1_설문조사 및 분석 개요
-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 3_소결

04_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

1_설문조사 및 분석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반조성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이 있음.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주체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목적: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유형 분석을 위한 관련 기관의 고용 정보 구득
 - 공식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관련 자료 구득이 불가
 -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자리 · 일거리 분석에 유효한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¹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17년 3월 20일 ~ 4월 6일
- 모 집 단: 광역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개소)’와 중간지원조직인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2017년 3월 기준 19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총 115명의 근로자(2017년 3월 기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개소)의 근로자 인원은 53명이고,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19개소)은 62명이 근무
 - 중간지원조직은 운영 방법에 따라 민간위탁형, 자치구 직영형, 민간네트워크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뉨.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근로자 인원을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형(3개소)에 14명, 자치구 직영형(5개소)에 11명, 민간네트워크형(11개소)에 37명이 근무

¹⁵⁾ 2017년 4월 현재 19개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중 조사에 응해 준 18개 지원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방식: 방문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 방문조사: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인터넷 설문조사: 중간지원조직보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외근이 잦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문항의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기반조성사업의 근로자 총 115명 중 70.4%인 8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유효응답률이 100.0%임에 따라 81개를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함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의 39.6%(21명) 참여
 -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위탁형, 민간네트워크형은 종사자 전원(100%)이 참여하였으며, 자치구 직영형은 종사자의 81.8% 참여

[표 4-1] 기반조성사업 설문조사 대상

구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계
		광역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서울시 마을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형	자치구 직영형	
모 집 단	전체 기관 수(개소)	1	3	5	11	20
	A. 전체 근무자 수(명)	53	14	11	37	115
설문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수(개소)	1	3	4	11	19
	B. 설문조사 참여 근로자 수(명)	21	14	9	37	81
	B/A=응답자 참여 비율(%)	39.6	100.0	81.8	100.0	70.4

2) 설문조사지 구성

- 조사 항목은 크게 응답자 일반사항과 일자리 · 일거리 특성으로 구분함
- 응답자 일반사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함
 - 연령, 성별, 주요 경력, 경력 연수, 현재 근무지, 현재 근무지 경력 연수, 총 경력 연수 등
- 근로자의 일자리 · 일거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총 9개임
 - 소속 기관, 기관 유형, 일자리 형태, 고용 형태, 고용 계약기간, 주당 평균 근로일수, 1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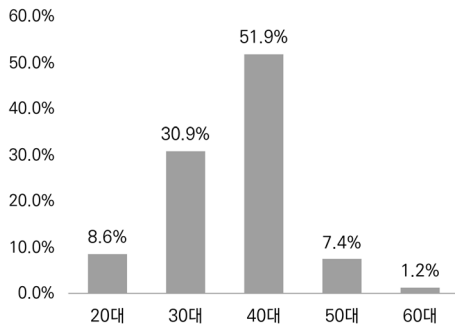
[표 4-2] 기반조성사업 대상 설문조사 항목

조사 항목	문항
응답자 일반사항	연령, 성별, 주요 경력, 경력 연수, 현재 근무지, 현재 근무지 경력 연수, 총 경력 연수
일자리 · 일거리 특성	소속 기관, 기관 유형, 일자리 형태, 고용 형태, 고용 계약기간, 주당 평균 근로일수, 1일 평균 근로시간,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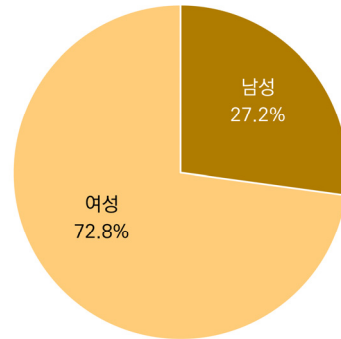
2_일자리 · 일거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사항

- 종사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
 - 연령대별로 40대 51.9%, 30대 30.9%, 20대 8.6%, 50대 7.4%, 60대 1.2% 순
- 성별은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의 2.7배
 - 여성 종사자가 72.8%, 남성 종사자가 27.2%로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 종사자의 비중을 45.7%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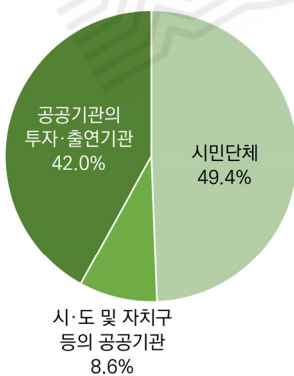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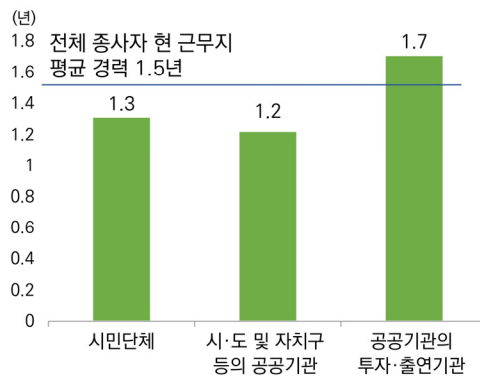
[그림 4-2] 응답자 성별 분포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49.4%는 시민단체, 42.0%는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8.6%는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신분으로 조사

- 전체 종사자의 현재 근무지 평균 경력은 1.5년
- 시민단체 종사자의 현재 근무지 경력은 평균 1.3년
-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현재 근무지 경력은 평균 1.2년
-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종사자의 현재 근무지 평균 경력은 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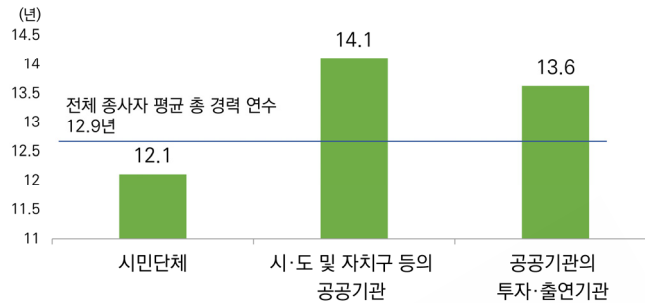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 현재 신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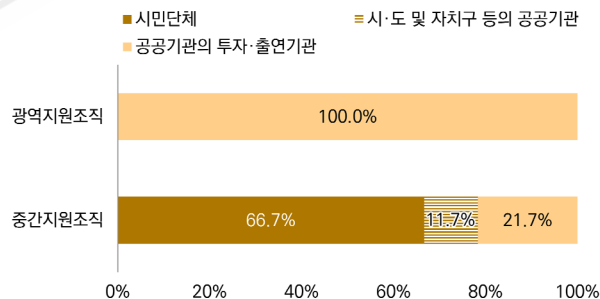
[그림 4-4] 응답자 신분별 현 근무지 경력 평균

- 전체 종사자의 총 경력 연수 평균은 12.9년¹⁶⁾
 - 시민단체 종사자의 총 경력 연수는 평균 12.1년
 -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총 경력 연수는 평균 14.1년
 -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종사자의 총 경력 연수는 평균 13.6년



[그림 4-5] 응답자 현재 소속 신분별 평균 총 경력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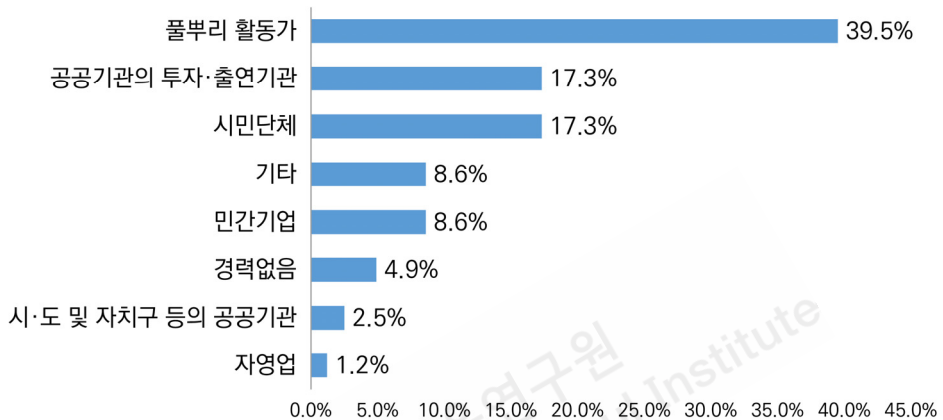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는 100%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소속인 반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66.7%는 시민단체 소속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는 100%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신분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는 66.7%는 시민단체, 11.7%는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11.7%는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소속



[그림 4-6] 응답자 소속기관별 신분 분포

¹⁶⁾ 여기서 산출된 총 경력 연수는 개인 근로자가 검임 및 검업을 통해 쌓은 경력을 모두 합한 경력 연수. 예를 들어 5년간 A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B기관에서 3년간 이사 등으로 활동한 근로자의 경력 연수는 8년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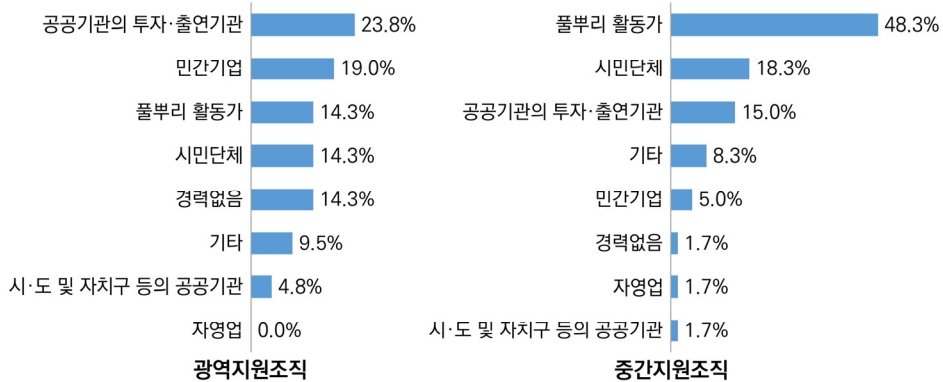
- 전체 종사자의 39.5%는 현재 근무지 직전¹⁷⁾ 풀뿌리 활동가로 활동
 - 현재 근무지 직전 근무지를 살펴보면 풀뿌리 활동가 39.5%, 시민단체 17.3%, 공공기관의 투자 · 출연기관 17.3%, 민간기업 8.6%, 기타 8.6%, 경력 없음 4.9%, 시 · 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2.5%, 자영업 1.2%의 순으로 조사



[그림 4-7]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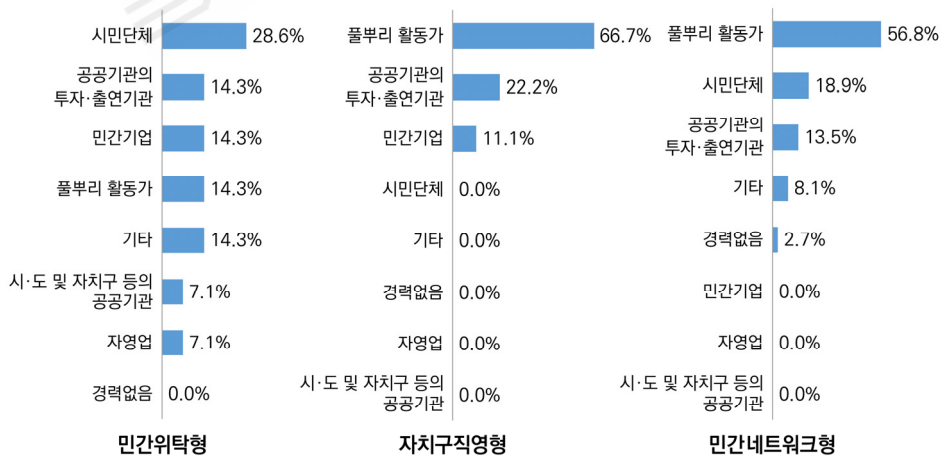
- 광역지원조직의 종사자는 풀뿌리 활동가가 약 49%를 차지하는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보다 다양한 출신 종사자로 구성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의 직전 근무지는 공공기관의 투자 · 출연기관 소속 23.8%, 민간기업 19.0%, 풀뿌리 활동가 14.3%, 시민단체 14.3%, 경력 없음 14.3%, 기타 9.5%,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4.8% 순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는 48.3%가 풀뿌리 활동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약 51%의 종사자는 시민단체 18.3%, 공공기관의 투자 · 출연기관 15.0%, 기타 8.3%, 민간기업 5.0%, 경력 없음 1.7%, 자영업 1.7%,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1.7%로 구성

1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특성상 현재 취업 중인 경력은 직전 경력의 형태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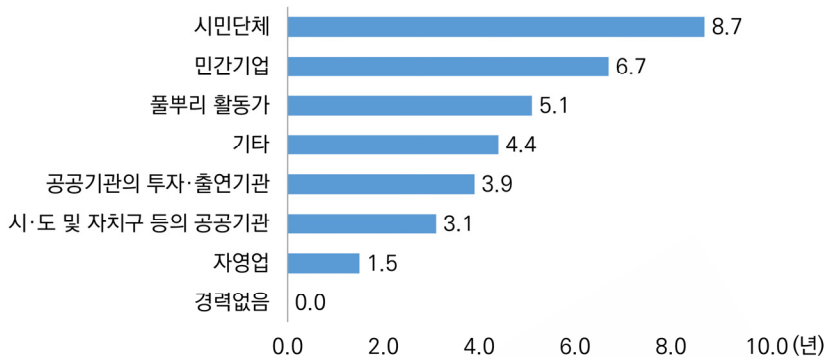
[그림 4-8] 소속기관별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 중간지원조직은 소속기관별로 종사자 직전 근무지가 상이
 -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28.6%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풀뿌리 활동가, 기타 출신이 각 14.3%,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7.1%, 자영업 7.1%로 출신 근무지 구성
 -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는 풀뿌리 활동가가 66.7%,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출신 22.2%, 민간기업 출신 11.1%로 구성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직전 근무지는 풀뿌리 활동가 56.8%, 시민단체 18.9%,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13.5%, 기타 8.1%, 경력 없음 2.7%로 구성



[그림 4-9] 중간지원조직 소속기관별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별 종사자 분포

- 종사자의 주요 경력별 경력 연수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높게 조사
 - 주요 경력별 평균 경력 연수는 시민단체 8.7년, 민간기업 6.7년, 풀뿌리활동가 5.1년, 기타 4.4년, 공공기관의 투자 · 출연기관 3.9년, 시 · 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3.1년, 자영업 1.5년으로 조사



[그림 4-10] 주요 경력별 평균 경력 연수

2) 일자리 · 일거리 특성 분석

(1) 기반조성사업 전체 일자리 · 일거리 특성

①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98.8%가 일자리에 해당

- 기반조성사업 종사자 98.8%의 고용 위치는 일자리에 해당
 - 사회보험과 소득세 납입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사자는 59.3%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세를 납부하여 일자리에 위치하는 종사자는 39.5%
 - 두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일거리 종사자는 1.2%

[표 4-3] 일자리 · 일거리 분류기준별 종사자 분포

구분		사회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소득세 납입 여부	납입	48건	(59.3%)	32건	(39.5%)
	미납입	0건	(0.0%)	1건	(1.2%)

- 광역지원조직인 마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 모두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인 반면, 중간지원조직인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과반(53.3%)은 임금 수준은 만족하지만 사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해당함
 - 광역지원조직인 마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모두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 위치를 점유
 - 중간지원조직의 98.3%는 일자리, 1.7%는 일거리에 해당¹⁸⁾
 - 중간지원조직 중 민간위탁형은 100% 일자리이며 그 중 85.7%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 중간지원조직 중 자치구 직영형은 100%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 중간지원조직 중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97.3%는 일자리이며 그 중 81.1%는 사회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표 4-4] 기반조성사업의 기관별 일자리 · 일거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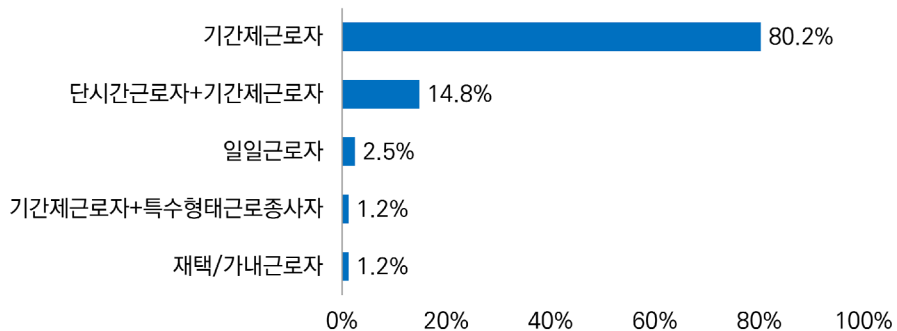
(단위: 건)

구 분	일자리			일거리
	사회보험/소득세 기준 만족		소득세만 납입	
광역지원조직	21	(100.0%)	0 (0.0%)	0 (0.0%)
중간지원조직	27	(45.0%)	32 (53.3%)	1 (1.7%)
민간위탁형	12	(85.7%)	2 (14.3%)	0 (0.0%)
자치구 직영형	9	(100.0%)	0 (0.0%)	0 (0.0%)
민간네트워크형	6	(16.2%)	30 (81.1%)	1 (2.7%)
계	48	(59.3%)	32 (39.5%)	1 (1.2%)

② 고용 형태는 기간제근로자가 80.2%로 최다

-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80.2%는 기간제근로자, 14.8%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 2.5%는 일일근로자, 1.2%는 재택/가내 근로자, 1.2%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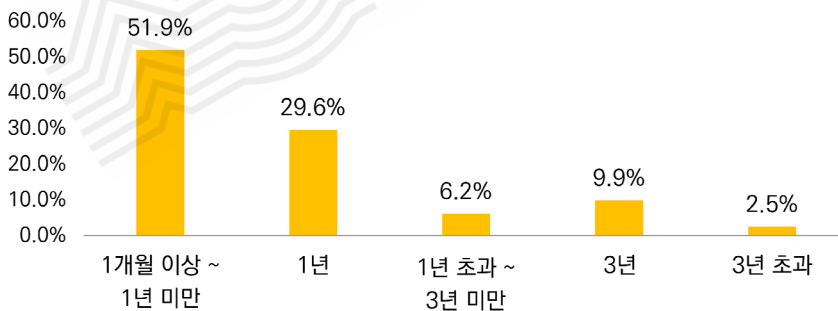
18)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 중 무급종사자 1인이 일거리로 분류, 그 외 유급종사자는 모두 일자리 점유



[그림 4-11] 기반조성사업의 종사자 고용 형태

③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하가 81.5%

- 기반조성사업 종사자는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계약자가 51.9%, 1년 계약자 29.6%, 1년 초과 ~ 3년 미만 계약이 6.2%, 3년 계약이 9.9%, 3년 초과 계약자가 2.5%로 구성
 - 기반조성사업은 모두 민간 위탁 또는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사자 전부 계약 기간이 명시된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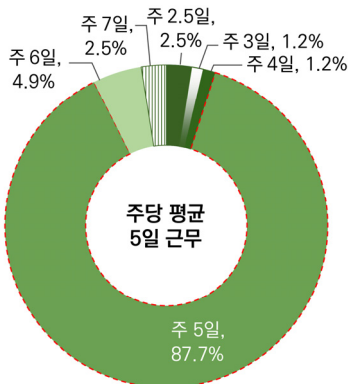


[그림 4-12] 기반조성사업의 종사자 계약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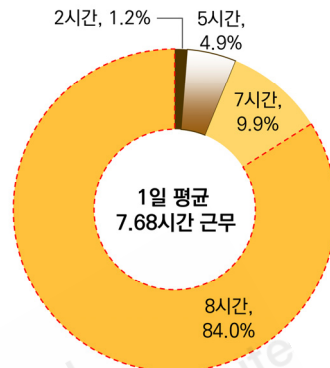
④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5일, 1일 평균 7.68시간 근무

- 기반조성사업 근로자는 주당 평균 5일, 1일 평균 7.68시간 근무
 - 종사자의 주당 근무 일수는 주 5일 87.7%, 주 6일 4.9%, 주 7일과 주 2.5일이 각각 2.5%, 주 3일과 주 4일이 각각 1.2%씩 구성

- 종사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84.0%, 7시간 9.9%, 5시간 4.9%, 2시간 1.2%로 구성
- 전체 종사자의 40.7%가 단시간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1일 평균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그림 4-13]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그림 4-14]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0만 원

-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0만 원으로,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급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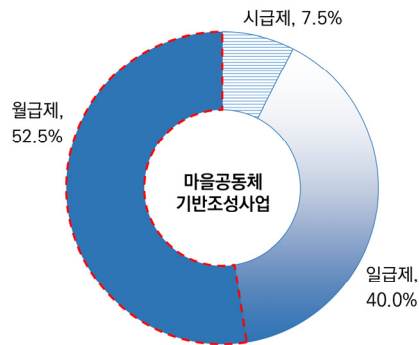
[표 4-5] 소속기관 유형별 임금 유급·무급 여부

(단위: 건)

구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광역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총계
		민간위탁형	자치구 직영형	민간 네트워크형	소계	
유급	21	14	9	36	59	80
무급	0	0	0	1	1	1
계	21	14	9	37	60	81

- 유급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은 월급제가 과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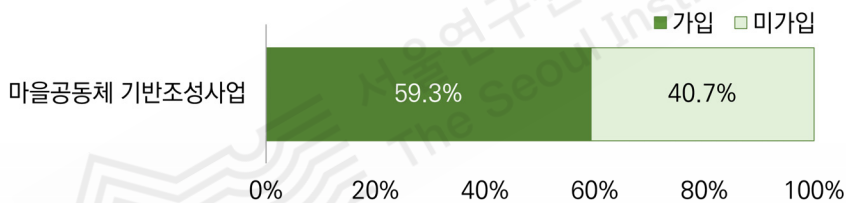
- 일자리의 임금산정기준은 월급제 52.5%, 일급제 40.0%, 시급제 7.5%로 구성



[그림 4-15] 임금 산정기준 분포

⑥ 종사자의 59.3%는 사회보험에 가입¹⁹⁾

- 기반조성사업 종사자의 59.3%는 사회보험에 가입된 반면 40.7%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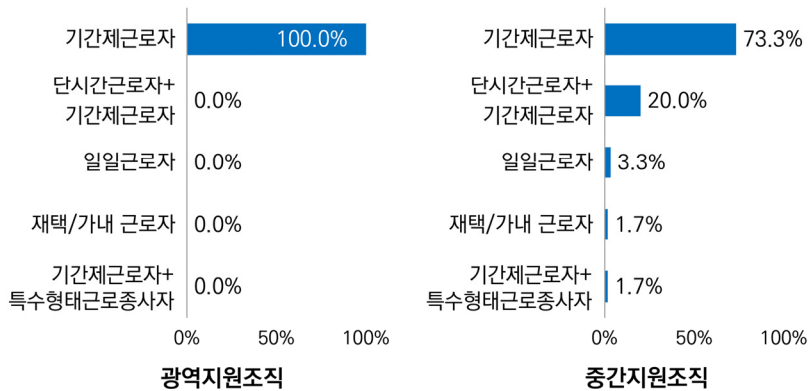
[그림 4-16]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여부

(2)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간 일자리 · 일거리 특성 비교

①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모두 기간제근로자가 대다수

- 광역지원조직은 종사자 100%가 기간제근로자
-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중 73.3%는 기간제근로자, 20.0%는 단시간근로자인 동시에 기간제근로자로 93.3%가 기간제근로자
 - 그 외 일일근로자 3.3%, 재택/가내 근로자 1.7%, 기간제근로자인 동시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7%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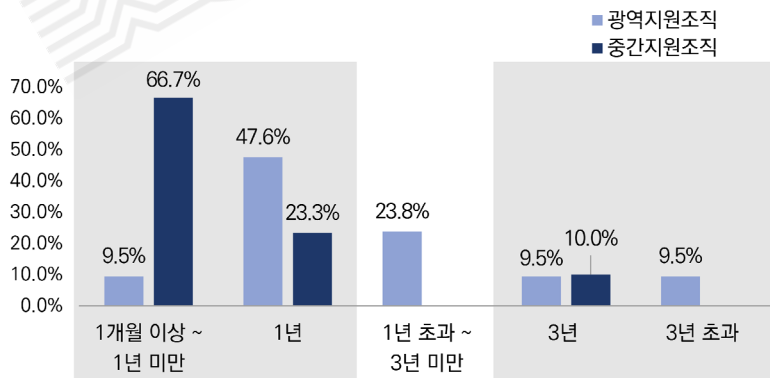
¹⁹⁾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을 이르며, 직장가입자만 사회보험 가입자로 간주



[그림 4-17]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고용형태

② 광역지원조직에서 3년 이상 계약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의 19.0%는 3년 이상 계약인 반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90%는 1년 이하 계약. 이러한 결과는 사업 위탁 기간²⁰⁾과 동일
 - 광역지원조직의 종사자 계약기간은 1년 47.6%, 1년 초과 ~ 3년 미만 23.8%, 1개월 이상 ~ 1년 미만, 3년 9.5%, 3년 초과 9.5% 순
 -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 1년 미만 66.7%, 1년 23.3%, 3년 10.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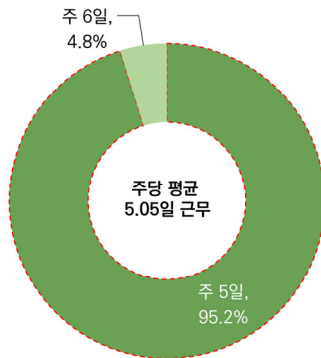


[그림 4-18]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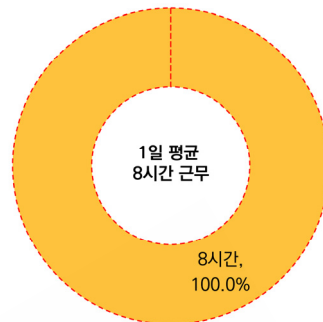
²⁰⁾ 광역지원조직의 민간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중간지원조직은 1년 이하임

③ 중간지원조직의 평균 근로일수, 평균 근로시간이 더 다양한 형태

- 광역지원조직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5.05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 종사자의 95.2%는 주당 5일 근무, 4.8%는 주당 6일 근무로 조사
 -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응답자 전부 8시간이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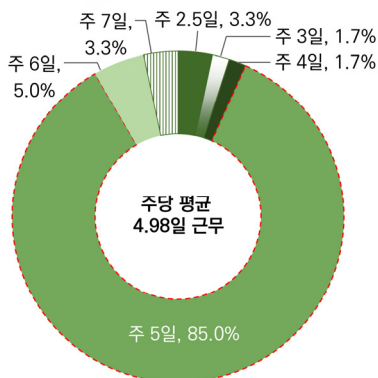


[그림 4-19]
광역지원조직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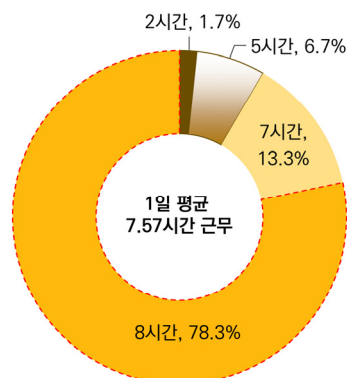


[그림 4-20]
광역지원조직의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 중간지원조직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98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7.57시간
 - 종사자의 85.0%는 주당 5일 근무, 5.0%는 6일, 3.3%는 7일, 3.3%는 2.5일, 1.7%는 3일, 1.7%는 4일 등의 순으로 분포
 - 종사자의 78.3%는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7시간 13.3%, 5시간 6.7%, 2시간 1.7%로 근무시간의 형태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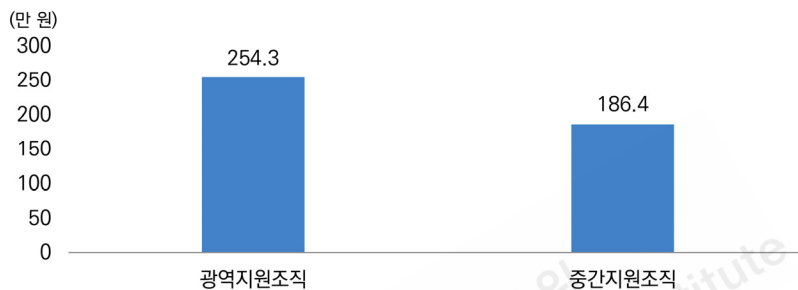
[그림 4-21]
중간지원조직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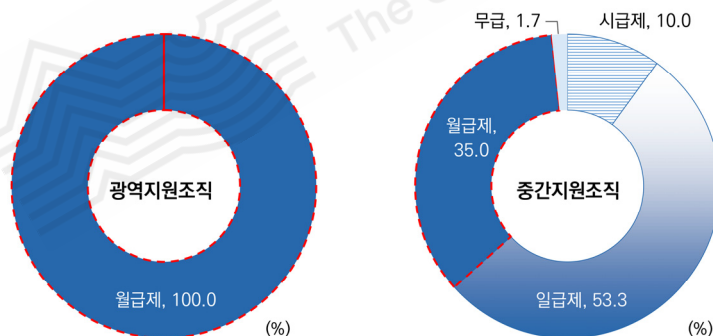
[그림 4-22]
중간지원조직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④ 광역지원조직의 임금 수준은 중간지원조직 평균의 1.4배

- 광역지원조직의 월평균 임금은 254.3만 원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의 임금은 100% 월급제로 산정
- 반면, 중간지원조직의 월평균 임금은 186.4만 원에 불과
 - 임금 산정기준 또한 월 급제는 35.0%에 불과하고, 일급제 53.3%, 시급제 10.0%, 무급 1.7%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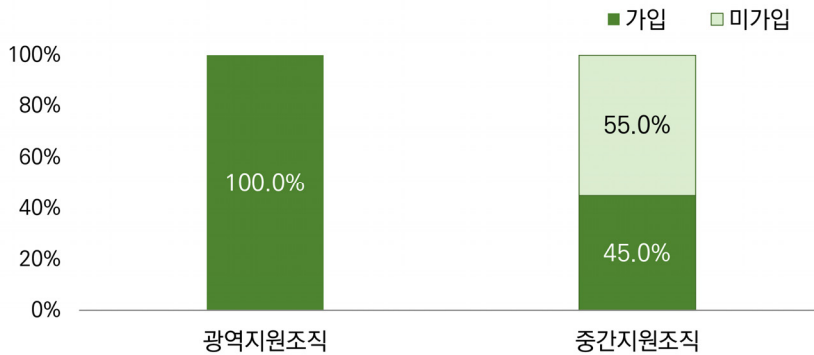
[그림 4-23]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월평균 임금



[그림 4-24]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임금 산정기준

⑤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55.0%는 사회보험 미가입자

- 광역지원조직 종사자는 100%는 사회보험에 가입
- 반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55.0%는 사회보험 미가입
 - 45.0%의 종사자만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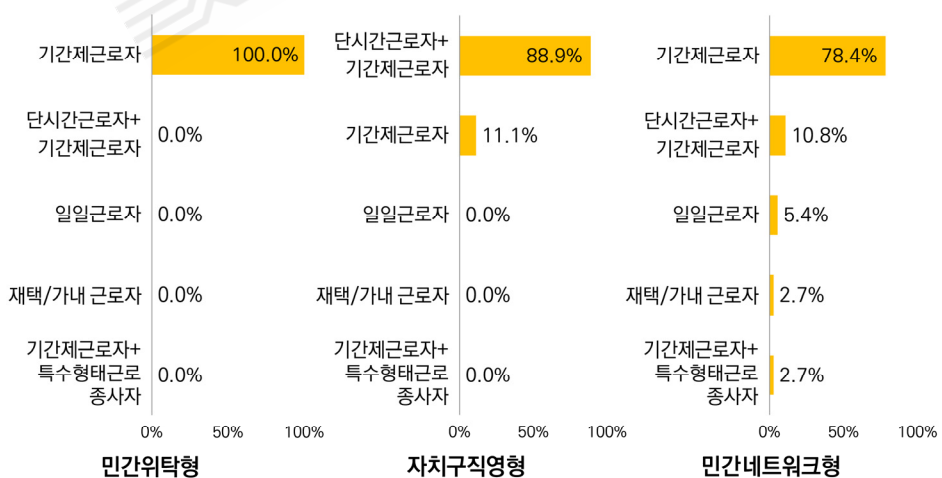


[그림 4-25] 광역지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 간 일자리 · 일거리 특성 비교

① 민간네트워크형에서는 일일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형태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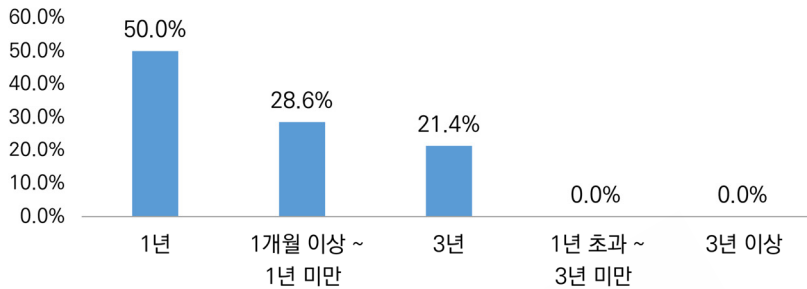
- 민간위탁형 종사자는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구성
- 자치구 직영형의 종사자는 단시간근로자인 동시에 기간제근로자가 88.9%, 기간제근로자가 11.1%로 구성
- 반면,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는 78.4%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동시에 기간제근로자 10.8%지만 일일근로자 5.4%, 재택/가내 근로자 2.7%, 기간제근로자인 동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



[그림 4-2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종사자의 근로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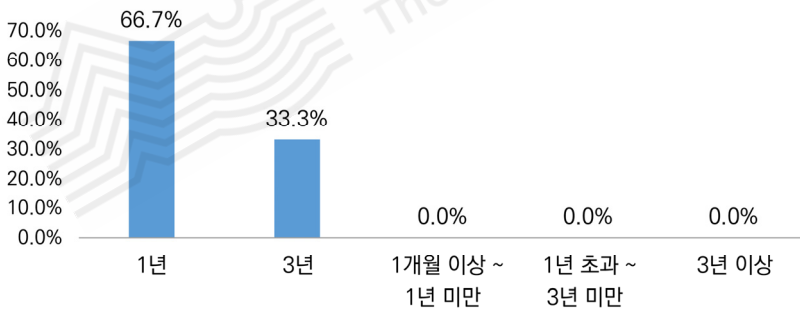
②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보다 안정적인 고용 계약기간 필요

-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약 80%는 1년 이하 계약
 -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계약기간은 1년 50.0%, 1개월 이상 ~ 1년 미만 28.6%, 3년 21.4%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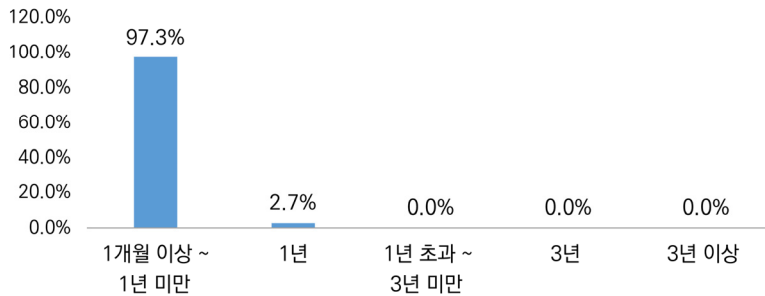
[그림 4-27]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과반은 1년 계약
 -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66.7%는 1년 계약, 그 외 33.3%는 3년 계약



[그림 4-28]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 민간네트워크형의 종사자는 100% 1년 이하의 계약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97.3%가 1년 미만 계약, 그 외 2.7%는 1년 계약
 - 모든 종사자가 1년 이하의 고용기간으로 계약



[그림 4-29]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계약기간

③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근로일수 보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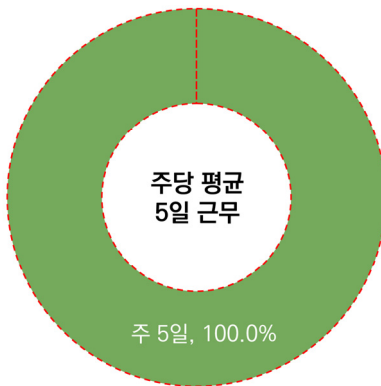
- 민간네트워크형을 제외하고는 상근 근로 형식의 근무 형태
 - 광역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직영형의 종사자는 100% 상근직
 - 그러나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의 10.8%는 비상근, 그 외 89.2%는 상근직으로 조사

[표 4-6] 소속기관 유형별 근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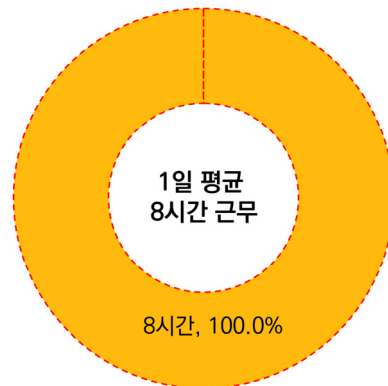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광역 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형	자치구 직영형	민간네트워크형	소계
상근	21	14	9	33	56
비상근	0	0	0	4	4
계	21	14	9	37	60

- 민간위탁형 종사자는 주당 평균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
 - 민간위탁형 종사자 100%는 주 5일 근무로 응답
 - 1일 평균 근로시간 또한 100% 1일 8시간 근무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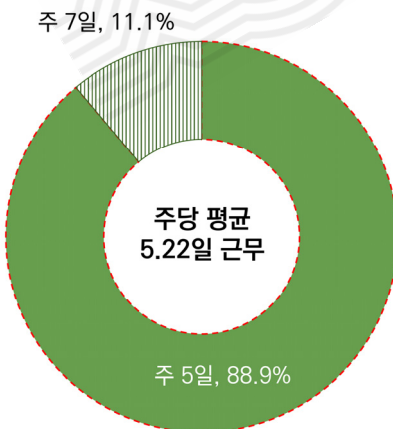


[그림 4-30]
민간위탁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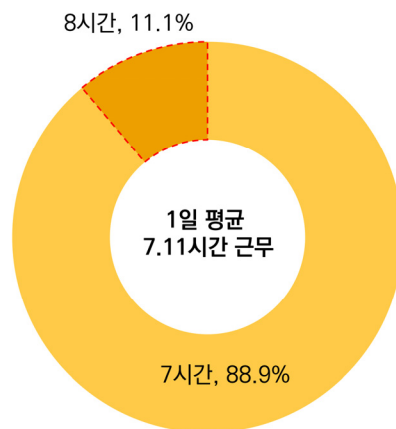


[그림 4-31]
민간위탁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는 주당 평균 5.22일 근무, 1일 평균 7.11시간 근무
 -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88.9%는 주 5일 근무, 11.1%는 주 7일 근무로 응답
 -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88.9%는 1일 평균 7시간 근무, 11.1%는 8시간 근무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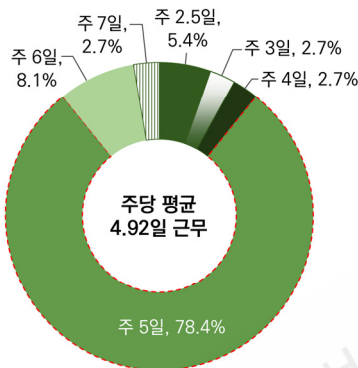


[그림 4-32]
자치구 직영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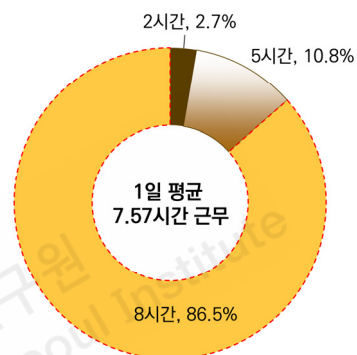


[그림 4-33]
자치구 직영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는 주당 평균 4.92일, 1일 평균 7.57시간 근무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78.4%는 주 5일 근무라고 응답하였으나 8.1%는 주 6일이라고 응답
 - 주 5일 미만인 2.5일이 5.4%, 3일이 2.7%, 4일이 2.7%로 조사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86.5%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 10.8%는 5시간, 2.7%는 2시간 근무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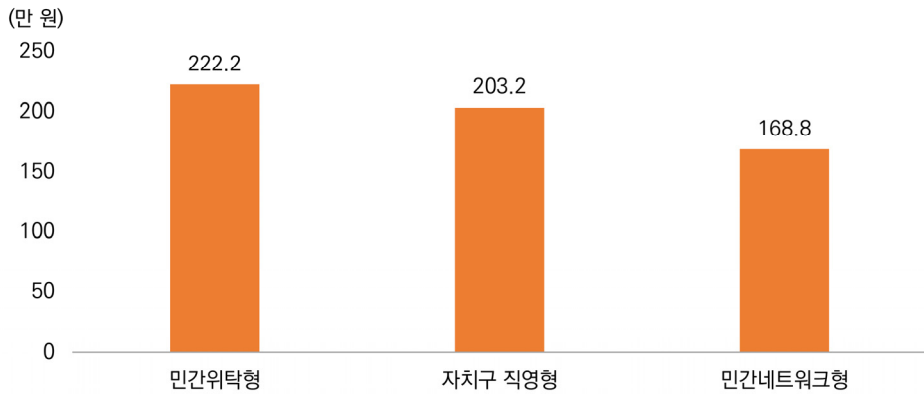
[그림 4-34]
민간네트워크형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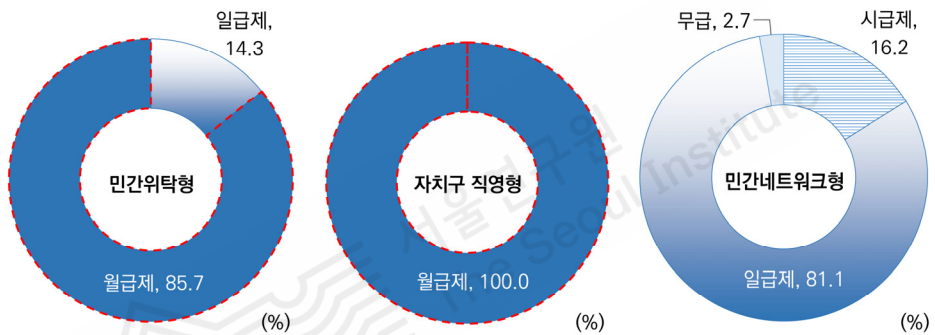
[그림 4-35]
민간네트워크형 1일 평균 근로시간 분포

④ 월평균 임금 수준은 민간위탁형 > 자치구 직영형 > 민간네트워크형 순

-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22.2만 원
 -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형의 임금산정방식은 85.7%는 월급제, 14.3%는 일급제
-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3.2만 원
 -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직영형 종사자의 임금산정방식은 100% 월급제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68.8만 원
 -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81.1%는 일급제, 16.2%는 시급제
 -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보전 임금산정 방식인 월급제의 비중은 0%
 - 고용계약 기간, 근로일수, 소득산정방식 등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고용 환경이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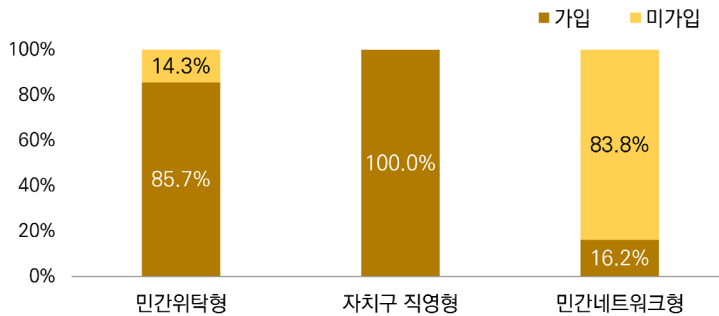
[그림 4-3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월평균 임금



[그림 4-37]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임금 산정기준

⑤ 사회보험 가입 측면에서도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고용 환경 열위

- 민간위탁형 종사자의 85.7%는 가입, 14.3%는 미가입
- 자치구 직영형도 종사자의 100%가 사회보험 가입
- 그러나 민간네트워크형 종사자의 경우 무려 83.8%가 미가입, 16.2%만이 사회보험 보장



[그림 4-38]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법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3_소결

-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특징은 주민제안사업과 달리 ▲ 사업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 ‘일거리’가 아닌 ‘일자리’가 절대적인 비중(98.8%)을 차지하며, ▲ 전체 근로자 중 95% 이상이 상근직으로 근무한다는 점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특성을 전국 임금근로자의 근로 조건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금과 관련된 전국 임금근로자와의 비교 기준은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등을 활용함
-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기준: 200만 원²¹⁾
- 최저임금(월급여) 기준(2017년): 1,352,230원²²⁾

1) 소속기관별 관참은 일자리의 분포

- 임금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중 과반은 전국

21)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6년 상반기(2017.05 기준 최신자료)

22)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위임금 이상 51.3%,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 38.8%, 최저임금(월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 10.0%로 구성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일자리가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일자리보다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비중이 28.1%p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일자리 중 71.4%는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고,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은 28.6%로 구성
 -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의 일자리 중 43.3%는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고,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은 41.7%로 구성
-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중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민간위탁형으로 조사됨
 - 민간위탁형 일자리의 78.6%는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고, 21.4%는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자치구 직영형의 경우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을 받는 일자리 비중(55.6%)이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비중(33.3%)보다 22.3%p 높게 조사
 - 민간네트워크형 일자리는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을 받는 일자리가 47.2%,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가 33.3%, 최저임금(월급여) 미만의 일자리 또한 19.4%를 차지

[표 4-7]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중 기관별 임금 수준 분포

(단위: 건)

구 분	중위임금 이상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		해당 없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5	(71.4%)	6	(28.6%)	0	(0.0%)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26	(43.3%)	25	(41.7%)	8	(13.3%)
민간위탁형	11	(78.6%)	3	(21.4%)	0	(0.0%)
자치구 직영형	3	(33.3%)	5	(55.6%)	1	(11.1%)
민간네트워크형	12	(33.3%)	17	(47.2%)	7	(19.4%)
계	41	(51.3%)	31	(38.8%)	8	(10.0%)

2) 임금 수준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비교

(1)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90% 이상은 기간제근로자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90.2%는 비정규직 중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형태인 기간제근로자
 - 중위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기간제가 아닌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고용형태가 3.9%, 일일근로자가 4.9%로 구성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는 기간제근로자 83.9%, 단시간근로자인 동시에 기간제근로자 16.1%로 구성
- 그 외 일자리는 단시간근로자인 동시에 기간제근로자 62.5%, 기간제근로자 25.0%, 기간제근로자이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5%로 구성
 - 단시간근로자 근로 형태는 노동유연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 수준은 취약

(2) 일자리의 구분과 상관없이 1년 이하 계약이 80% 이상, 불안정한 고용 환경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와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의 계약기간 비중은 유사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의 78.0%는 1년 이하 계약, 1년 초과 ~ 3년 미만은 7.3%, 14.6%는 3년 이상 계약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는 80.6%가 1년 이하 계약을 유지, 1년 초과 ~ 3년 미만은 6.5%, 3년 이상은 12.9%로 구성
 - 그 외 일자리는 100% 1년 이하의 계약

(3)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의 종사자는 타 일자리에 비해 주당 근무 일수가 많은 편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는 주당 평균 5.2일, 1일 평균 7.95시간 근무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의 85.4%는 주 5일 근무, 9.8%는 주 6일, 4.9%는 주 7일 근무
 -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의 95.1%는 1일 평균 8시간, 4.9%는 7시간 근무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는 주당 평균 5일, 1일 평균 7.84시간 근무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는 100%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의 83.9%는 8시간, 16.1%는 7시간 근무
- 최저임금(월급여)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그 외 일자리는 주당 평균 4.1일, 1일 평균 6.38시간 근무
 - 그 외 일자리는 62.5%만이 주 5일, 25.0%는 주 2.5일, 12.5%는 주 3일 근무
 - 그 외 일자리의 50.0%는 1일 평균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7.5%는 8시간, 12.5%는 7시간으로 조사
 - 그 외 일자리는 최저임금(월급여) 이상의 소득 보전을 위한 근무시간 보장이 필요

(4)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의 임금은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 임금의 1.5배 수준

- 기반조성사업 일자리 중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가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 일자리의 임금보다 1.5배 높은 수준
 -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 임금은 253.6만 원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의 임금은 172.5만 원
 - 그 외 10%의 일자리 임금은 98만 원에 불과
-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의 70.7%,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의 38.7%는 월급제
 -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는 월급제 70.7%, 일급제 29.3%로 구성
 -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는 월급제 38.7%, 일급제 54.8%, 시급제 6.5%로 구성
 - 그 외 일자리는 월급제 12.5%, 일급제 37.5%, 시급제 50.0%

3) 종합

- 기반조성사업은 주민제안사업과 달리 ‘일자리’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98.8%)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일자리 특성을 임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가 절반을 넘고 있고(51.3%), 최저임금(월급여) 이상 ~ 중위임금 미만의 일자리 또한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중위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고용환경 특성을 보여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5

종합 및 논의

- 1_사업유형 간 일자리 · 일거리 주요결과
- 2_논의 사항

05 | 종합 및 논의

1_사업유형 간 일자리 · 일거리 주요결과

1) 일자리 · 일거리 생성 효과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인 주민제안사업(단위사업 6개 해당)과 기반조성 사업을 종합하여 투입 예산 및 일자리 · 일거리 발생 개수를 정리함
-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합산한 결과 전체 14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47명의 인력을 사업에 참여시킴. 이 중 일자리 해당 인력은 741명으로 전체 대비 26.0%를 차지하고 있고, 일거리는 2,106명으로 74.0%를 차지함
 - 주민제안사업은 3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732명의 일자리 · 일거리를 생성함
 - 기반조성사업은 10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15명에게 일자리 · 일거리를 제공함²³⁾. 115명은 광역지원조직의 설문조사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임
-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생성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 = 최종 수요’라는 가정하에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2014년 기준, 최신 연도)와 비교해 봄
- 그 결과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는 160.3(명/10억 원)으로 나타났고, 기반조성사업은 11.1(명/10억 원)로 조사되어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가 기반조성사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상기 내용은 단순비교 결과임.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일자리 · 일거리의 임금 수준, 고용(활동) 기간 등의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비교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²³⁾ 이 보고서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특성 파악은 설문조사 참여자인 81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조사 미참여자 34명은 제외한 결과임. 5장 종합정리에서의 일자리 · 일거리 생성 효과는 설문조사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함

- 특히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는 산업연관표 내 유사한 분야이며 취업유발계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 41.0(명/10억 원)보다도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발생 효과

구분	사업 예산		일자리 생성 건수 (건)	일자리 발생 효과 (명/10억 원)
	금액(천 원)	비고		
주민제안사업	3,912,435	- 2015년 예산액 기준 - 연구 대상 6개 단위사업 기준	627	160.3
기반조성사업	10,282,916	- 2017년 예산액 기준 - 광역지원조직: 5,218,436천 원 - 중간지원조직: 5,064,480천 원	114	11.1
합 계	14,195,351		741	

[표 5-2]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 취업유발계수(통합중분류)

구 분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001	작물	45.1
	:	
071	연구개발업	13.0
	:	
074	사업지원서비스	28.7
	:	
078	사회복지서비스업	41.0
	:	
081	사회단체	27.6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30.2
083	평균	12.5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접속 일자: 2017. 5. 18)

2) 일자리 · 일거리 관련 세부특성

- 상기 내용에서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 효과가 기반조성사업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발생 효과 외에도 두 사업유형 간 고용과 관련된 세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 · 일거리 관련 세부특성으로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 비중, 임금 수준, 근무 기간 등의 비교가 가능함
- 먼저,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 비중을 비교해보면 주민제안사업은 627개의 일자리 중 1.4%만이 중위소득 이상을 받은 반면 기반조성사업은 80개의 일자리 중 51.3%가 중위소득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기반조성사업이 주민제안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현재 기준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상반기 기준): 200만 원
- 둘째, 두 사업유형 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기반조성사업은 월 평균 207만 원 수준인 반면 주민제안사업은 임금 조건이 나은 일자리 해당 인력조차 월 평균 62.6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사업 간 사업 내용, 근무(활동) 기간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근무(활동) 기간을 비교해보면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는 1개월 이상 ~ 1년 이하가 80%를 상회하고 3년 이상도 10% 수준을 보임. 그러나 주민제안사업은 (일거리가 아닌) 일자리조차도 평균 29일 정도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용기간이 굉장히 짧게 나타남. 이는 기반조성사업이 사업체(기관)에 소속된 일자리가 대부분인 반면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모임에서의 단기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 일거리가 많기 때문임

[표 5-3] 기반조성사업과 주민제안사업 간 일자리 · 일거리 관련 세부특성

구분	기반조성사업		주민제안사업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 일거리 개수	80개 (설문조사 미참여자 포함 시 114명)	1개	627개	2,105개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	51.3%	-	1.4%	-
평균 월 급여	207만 원	무급(겸직)	62.6만 원	13.2만 원
평균 일 급여	-	-	14.5만 원	10.9만 원
근무(활동) 기간	1개월 이상 ~ 1년 이하 80%		평균 29일	평균 4일
기 타	- 기반조성사업의 98.8%는 일자리에 해당 - 일거리 1개: 타 직장에 다니면서 무보수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		- 주민제안사업의 23.0%만이 일자리에 해당	

-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발생 효과는 주민 제안사업이 기반조성사업보다 우수하고, 다른 어떤 산업의 일자리 효과보다도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 비중, 임금,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기반조성사업이 오히려 주민제안사업보다 고용조건에서는 우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3) 일거리 관련 제언

- 상기 내용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거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기 때문에 ‘일거리’ 생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일거리’에 해당하는 참여 인력들은 돈벌이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음
 - 즉,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일거리’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또한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여성 관계자는 주민제안사업의 참여자(일거리에 해당)로 시작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현재는 일자리로 발전하였다고 언급함
- 이렇듯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의 ‘일거리’는 주민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2_논의 사항

1)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인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를 일자리·일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일자리·일거리 측면에서 주민제안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사업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주민제안사업의 단위사업 간에도 사업 목표와 담당 부서, 세부 추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 결국 연구기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제안사업은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단위사업별로는 11개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일자리·일거리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방법의 개선,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지출결의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데이터 구축 방법의 개선

-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로는 사업 제안서, 결과 보고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등이 있음. 사업 제안서는 사업 시행 전 계획 단계에서 작성되는 자료로 정확한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있음. 결과 보고서는 취합 및 정리, 전산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주민제안사업의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지출 사항과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함. 그러나 당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일거리 성과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향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면 일자리·일거리 분석 시 유용하며 보다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개선 필요 ①: 각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의무 작성 필요(본청 실·국 사업 중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지출결의서 미작성)
 - 개선 필요 ②: 인건비성 경비만 별도로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 개선 필요 ③: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앞 7 자리(연령, 성별 확인용), 거주지, 연락처 등) 입력 의무화
 - 개선 필요 ④: 지출결의서 작성 시 활동 일시, 요일, 활동 시작 및 종료 시 각 입력 의무화
 - 개선 필요 ⑤: 지출 내용이 미가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출결의서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산출 내역을 포맷화(산출내역 포맷화 예시. 총 인건비 = 시간당 인건비(000만 원) X 활동 총 시간(0시간) X 활동일(날짜 명시))
 - 개선 필요 ⑥: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서 사전 확보(연구목적용으로 사용)

3) 시스템의 개선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단위사업 형식으로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 성장단계별, 활동 및 공간 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접근이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전시킨다면 일자리·일거리 연구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를 설정한 후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됨

4) 지출결의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대표자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임
- 사업 대표자 각각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성 내용이 보조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자료 구축이 어려움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담당부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책임하에 지출결의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위사업 중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기타

- 이 연구는 일자리·일거리 발생 성과와 관련하여 정량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접근함. 그러나 일자리·일거리에 대한 만족도 및 세부 특성, 발생 경로, 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방법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종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분석 단위를 단위사업에 한정하기보다는 주제별, 성장 단계별로 묶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커뮤니티 사업’ 등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범식 · 김묵한, 2014, 서울시 관чат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_____, 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 _____, 2015, 사람사는 재미 마을공동체
- _____, 2017, 내부자료(업무현황 바이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마을은 형성되고 있는가
- _____,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현황 연구
- _____, 2015, 2016년 사업 추진계획(안)
- _____, 2016, 해외유사정책 사례연구 출장보고서
- 서울연구원, 2016, 마을공동체: 살맛 나는 도시
- 안현찬,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산업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최종보고 자료, 서울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일자리행정통계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6년 상반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ssd.wooribank.com/seoul/>)
- 통계청 홈페이지,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 OECD 홈페이지, 국가 행복지수(<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 OECD 홈페이지, 자살률(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6_9789264261488-en#.WSaOPCCLS71#page120)

부록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 현황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	--	---	--	--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성과 및 유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일거리의 성과 및 특성 파악과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내용과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연구진 : 조달호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유인혜 연구원

■ 회신처 : Fax. 02-2149-1289 / E-mail. inhye215@si.re.kr / Tel. 02-2149-1073

1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세)
2.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주요경력 및 경력연수를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오래된 순부터 차례대로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 다른 사업체에서 종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의 경력 및 경력 연수 모두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 ① 시민단체 예) 시민연합, 시민연대, 환경연합, 협동조합 등
 ② 풀뿌리 활동가 예) 청년활동가, 코디네이터, 마을지원활동가, 컨설턴트, 마을 대표 등
 ③ 시·도 및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예) 정부 시·도, 자치구 등 소속 공무원
 ④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예) 시·도 및 자치구 소속 연구원, 복지관, 센터 등
 ⑤ 민간기업 ⑥ 자영업 ⑦ 경력 없음 ⑧ 기타(직접 기입:)

기입순서	주요경력	경력 연수
	작성 방법: '해당 번호' 및 '세부 활동' 기재 (예. ② 청년활동가 → ① 환경연합 회원)	작성 예시) 6년 5개월
오래된 경력		()년 ()개월
↓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현재 근무지		()년 ()개월

⇒ 총 경력 연수 ()년 ()개월

2 일자리 특성

4.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마을중합지원센터(☞ 5번으로 이동) ②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 4-1번으로 이동)

↳ 4-1. 귀하가 근무 또는 활동하는 기관의 유형은?

- ①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형 ② 마을지원센터 자치구 직영형 ③ 민간 네트워크형

↳ 4-2.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해당 자치구는? ()구

5.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정원내 직원)(☞ 6번으로 이동) ② 비정규직(정원의 직원, 전문 계약직 등)(☞ 5-1번으로 이동)

↳ 5-1. 귀하의 고용 또는 활동 형태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모두 표시(V)해 주십시오.

- ① 일일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기간제근로자 ④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재택/가내 근로자 ⑦ 파견 근로자 ⑧ 용역 근로자

[비고]

- ① 일일근로자 :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계약기간 없음) ② 단시간근로자 :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등(계약기간 있음)
③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자 ↔ ④ 한시적 근로자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6. 귀하의 고용 또는 활동의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④ 1년 초과 ~ 3년 미만
⑤ 3년 ⑥ 3년 이상 ⑦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음

7. 귀하의 근무 형태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상근 ② 비상근

↳ 7-1. 귀하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일 / 월

↳ 7-2. 귀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 / 일

8. 귀하의 임금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표시(V) 후 기준액과 월평균 임금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령 여부	임금 산정기준	기준액	1개월 월평균 임금액(최근 기준) (※ 기본급, 직책수당, 성과급 등 모두 포함)
① 유급	① 시급제	() 만 원/시간당	평균 () 만 원 / 월
	② 일급제	() 만 원 / 일당	
	③ 월급제	() 만 원 / 월	
	④ 실적급제	() 만 원/실적당	
② 무급	-	-	-

9. 귀하가 가입되어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V)해 주십시오.

- ① 고용보험 ② 건강보험(의료보험) ③ 국민연금 ④ 산재보험 ⑤ 해당사항 없음

~ 이상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Employment Effects of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Dalho Cho · In Hye Yu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CSP) has been a major measure in the Community Empowerment Policy (CEP)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since 2012. Many citizens hav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rebuild their communities, and some citizens were provided jobs and/or works after being hired by the program.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quant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e program. CSP is composed of the Citizen Proposal Program (CPP) and the Infrastructure Program (IP). The IP runs experts to help citizens in CPP.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effects of CPP and IP.

Jobs (works) are defined as earning more (less) than 250,000 Korean Won per month.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IP and six different CPPs in the year 2015. The budget for it was 14.2 billion won.

The number of jobs generated by the CSP was 741, and that of works was 2,106. This number seems huge. In particular, CPP had an enormous effect on creating jobs. One billion Won budgeted towards the CPP generated more than 160 jobs, which was about four times more than the final demand of the best job-creating industry. However, CPP mostly created low-paying jobs.

On the other hand, IP made just 114 jobs. Its labor inducement coefficient was 11.1, which means that 10 billion Korea Won allocated towards the IP program created about 11 jobs. This value is about the average of the labor inducement coefficient in Seoul, and far less than 160 of CPP. However, the IP created well-paid jobs.

The major difference in employment between the CPP and IP was working days. The typical jobs created by IP were full-time jobs that lasted for at least six months. Meanwhile, the typical jobs made by the CPP were part-time jobs lasting less than one month.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Main Content and Research Methods
- 3_Definition of Job and Work

02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 1_Introductions to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 2_Citizen Proposal Program
- 3_Infrastructure Program

03 Jobs and Works of The Citizen Proposal Program

- 1_Data Structure and Analysis
- 2_Jobs and Works of The Citizen Proposal Program

04 Jobs and Works of The Infrastructure Program

- 1_Survey and Analysis
- 2_Jobs and Works of The Infrastructure Program

05 Conclusion

서울연 2016-BR-2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창출효과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7년 6월 3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31-3 9332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